기본연구과제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효과와 대책

박 경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2

II. 한·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 ····· 4

1. FTA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미 FTA의 협상과정 ····· 4
2.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 12

III. 외국의 사례 ····· 22

1. 캐나다·미국 FTA ····· 22
2. 멕시코·미국 FTA ····· 24
3. 시사점 ····· 27

IV. 지역경제 효과 분석 ····· 29

1.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29
2. 한·미 FTA 협상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 65
3. 한 · 미 FTA 협상이 충남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 83
4. 한·미 FTA 협상의 간접적 영향 ····· 99

V. 결론 : 요약 및 충남의 대응 전략 ····· 107

1. 연구의 요약 ····· 107
2. 대 중앙정부 요구 부문 ····· 108
3. 충남의 대내적 대책부문 ····· 111

참고문헌 ····· 117

표 목 차

<표 2-1> 자유무경협정(FTA) 체결추이 ····· 5
<표 2-2> 한·미 FTA 분과별 2차 협상내용 요약 ····· 10
<표 2-3> 한·미 FTA 협상진행 일지 ····· 12
<표 2-4> 한·미 FTA의 파급효과(KIEF) ····· 15
<표 2-5> 한·미 FTA의 교역부문 경제효과 ····· 15
<표 2-6> 한·미 FTA의 부문별 경제효과 ····· 16
<표 2-7> 한미산업별 관세율(%) ····· 17
<표 2-8> 한·미 FTA의 제조업 품목별 영향 ····· 18
<표 2-9>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부문 효과 ····· 20
<표 4-1>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추이 ····· 29
<표3 4-2> 2005년 한·미 주요 수출입품 ····· 30
<표 4-3>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신고액 기준 ····· 31
<표 4-4>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별 직접투자 추이 ····· 33
<표 4-5> 미국·호주 FTA의 미국 관세 양허 ····· 34
<표 4-6>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 ····· 36
<표 4-7>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조치(2006.6월 현재) ····· 39
<표 4-8> 한국이 미국상품에 취한 무역규제 조치(1987～현재) ····· 40
<표 4-9> 한·미 양국의 주요 품목별 관세율 ····· 42
<표 4-10> 관세율 수준별 산업 ····· 42
<표 4-11> 한·미 FTA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영향 ····· 43
<표 4-12>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 추이 ····· 45
<표 4-13> 한·미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예상효과 ····· 45
<표 4-14> 전자제품별 대미 수출입 추이 ····· 46
<표 4-15> 충남의 경제현황 ····· 47
<표 4-16>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 48

<표 4-17> 충남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 49
<표 4-18> 광역시도 GRDP(2000년 기준가격) 및 수출 현황 ····· 51
<표 4-19> 2005년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 52
<표 4-20> 충남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 52
<표 4-21> 충남의 국가별 수출 현황 ····· 53
<표 4-22> 2005년 충남의 대미 수출입 ····· 54
<표 4-23>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 ····· 55
<표 4-24> 대미 수출함수의 추정 ····· 56
<표 4-25> 충남의 대미 수입함수의 추정 ····· 57
<표 4-26> 충남의 외국인 투자현황 ····· 58
<표 4-27> 충남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 58
<표 4-28> 충남의 규모별 외국인 투자현황 ····· 59
<표 4-29>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 유입 ····· 59
<표 4-30>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 60
<표 4-31>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과 중소기업 비중 ····· 61
<표 4-32> 충남에 있어 삼성계열 기업의 위치 ····· 61
<표 4-33>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63
<표 4-34> 2004년 충남 제조업의 중소기업 비중 ····· 63
<표 4-35>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요구 분야 ····· 64
<표 4-36> 미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효과가 낮은 이유 ····· 65
<표 4-37> 대미 농산물 수입 추이 ····· 66
<표 4-38>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양허관세 비교 ····· 67
<표 4-39>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 ····· 70
<표 4-40> 충남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와 부문별 성장률 ····· 71
<표 4-41> 전국 및 충남의 농수산부문 GRDP(2004년 경상가격) ····· 71
<표 4-42> 작물별 재배면적(2004년 기준) ····· 72
<표 4-43> 축산가구 및 가축 수(2004) 전국 대비 충남 비중 ····· 72
<표 4-44> 충남 농산물 수출 현황 ····· 73
<표 4-45> 충남의 농업생산 감소액 ····· 74

<표 4-46>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전국) (2001~2003년 평균) ····· 76
<표 4-47> 충남의 품목별 생산액 순위(2004) ····· 77
<표 4-48>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충남의 농산물 생산 감소액 ····· 78
<표 4-49> 충남의 시군별 농산물 생산 감소액 ····· 79
<표 4-50> 쌀 제외 시 시군별 생산 감소 비중과 주요 피해 품목 ····· 80
<표 4-51> 시나리오별 충남 농축산부문의 지역내 총생산(부가가치) 감소 비율 ····· 81
<표 4-52> 서비스 공급형태별 자유화도 ····· 84
<표 4-53> 모드 3의 업종별 자유화 ····· 84
<표 4-54> 미국형 FTA에서 추가적 서비스개방 ····· 86
<표 4-55> 한미서비스무역 (2003년) ····· 89
<표 4-56>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과 비교한 미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 90
<표 4-57> 충남 서비스업 업종별 총생산 증가율 ····· 95
<표 4-58> 충남 서비스업종별 지역내총생산 및 특화도 ····· 96
<표 4-59> 시도별 산업구조(2004년 GRDP 기준) ····· 100

그 림 목 차

<그림 4-1>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교역비중 추이 ····· 30
<그림 4-2> 미국에 대한 수출국의 비중 ····· 31
<그림 4-3> 미국의 대한 투자 추이 ····· 32
<그림 4-4> 전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 94
<그림 4-5> 한·미 FTA 이후 산업구조 차에 따른 시도별 성장률 전망 ····· 101
<그림 4-6> 멕시코의 지역별 1인당 GDP 성장률과 지역격차(1993~2000) ····· 10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전인 1년 안에 한·미 FTA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 FTA는 한·싱가폴 FTA, 한·칠레 FTA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히 이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지식정보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적 효과의 두 가지 방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다시 대별되며, 간접적 효과는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간 성장격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효과는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 간·산업 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이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아울러 FTA의 체결은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한·미 FTA가 충남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파악한다. 특히 산업별로,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이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불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내용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이론과 한·미 FTA 협상과정, 그리고 한·미 FTA에 따른 기존의 경제파급효과 연구 등을 다룬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격상 시장통합적인 것과 시장확대적인 것으로 나눌 때, 한·미 FTA는 시장확대적 협정으로 'WTO plus' 성격을 갖는다. 한·미 FTA로 개방과 경쟁이 강화되면 이익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제 2장에서는 그간의 협상경과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해 나타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쟁점들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한·미 FTA는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그 효과와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캐나다-미국간의 FTA, 멕시코- 미국간의 FTA 등을 통해 미국이 맺은 FTA의 효과, 특징, 그리고 시사점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한·미 FTA의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분석하고 지역격차,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한·미 FTA의 간접적인 효과도 검토한다. 산업부문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파악하되,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협상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고, 농업의 경우 쌀이 협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쌀이 포함되는 경우(시나리오 2)로 나누어 그 영향을 예측해 본다. 서비스업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및 건축설계, 세무, 통신 등 100여개 부문에 걸쳐 유보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공공서비스, 소수민족우대, 원자력 산업 등 총 19개 부문에서 유보안을 내 놓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과 미국 간 개방의 기본원칙에 관해 큰 이견이 없는 사업서비스의 경우 일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된다고 보고, 공공서비스 부문은 장기적으로 개방의 영향 하에 놓인다고 가정하여 그 영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제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대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과 산업구조조정 및 피해구제 등 충남이 대내적으로 대처할 사항을 다루기로 한다.

II. 한·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

1. FTA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미 FTA의 협상과정

1) 세계경제 통합화의 종류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라는 기치 아래 1995년의 WTO출범 이후 세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타결되면 농업, 공산품, 서비스 시장 개방만이 아니라 규범개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국가 간의 이해상충이 심각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DDA협상은 난관에 봉착하여 추가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국 간 혹은 몇몇 국가 간에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라는 기치아래 탄생한 WTO 출범 이후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

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넷째,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이 최소화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계별 무역자유화를 제외한다면 당사국들은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에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현재 193개에 이르는데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FTA가 2/3에 이르고 있다.

〈표 2-1〉 자유무경협정(FTA) 체결추이

년도	1955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2.1
신규	3	1	3	10	8	6	3	47	82
누계	3	4	6	16	24	30	33	80	162

지역경제통합은 참여하는 몇몇 국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리고 경제동맹의 형태로 분류된다.

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가맹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대외국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에 회원국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주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대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우회수출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산지규정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이 지니고 있는 우회수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는 자유무역을 하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를 실시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이 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에 주안점이 주어진다면, 공동시장은 보다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만이 아니라 회원국 간에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까지 허용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재화나 서비스의 자유화,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자유화만이 아니라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까지 협조 내지 공동정책을 실시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현재의 EU가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의 원래 개념은 경제통합의 초보단계라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에 따라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공동시장, 즉 요소이동의 자유화까지 포함되는 추세이므로 자유무역협정을 경제통합의 초보단계라고 너무 도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은 성격상 시장통합이냐 아니면 시장확대냐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다. 시장통합적 자유무역협정이란 지리적으로 이웃한 국가들 간에 보다 발전된 시장통합을 목표로 하면서, 단계적인 통합의 단계로서 회원국 간에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확대적 자유무역협정이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무역의 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목적이 주어져 'WTO plus'적 성격을 지닌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일반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대별되어 설명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자국에서 생산하던 물품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회원국 제품으로 대체됨으로써 생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역이 증가하여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서는 국내 생산 감소나 실업 등의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무역전환효과이다. 무역전환효과란 자유무역 전에 효율적인 제3국으로부터의 이루어지던 수입이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으로 비효율적인 국가인 회원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서 수입하던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감소할 뿐 아니라 국민후생이 감소하게 될 수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민후생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맹국간의 무역비중이 클수록 후생증대효과가 크다. 이는 가맹국간의 무역비중이 크면 클수록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율이 높아 수입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생효과가 크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무역창출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구조가 유사할수록 후생증대효과가 크다. 산업구조가 유사하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유사하면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쟁이 보다 치열해져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미 FTA의 협상과정

지난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워싱턴)과 한국(서울)에서 1, 2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차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 기술 장벽 부문을 제외한 15개 부문(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상품무역)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에 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양국의 상품의 개방단계, 신 금융 서비스 진출, 서비스 개방 유보안[1] 교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1차 협상은 양국이 상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의 기초자료인 통합협정문 작성을 목표로 하였다. 전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자동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2] 가운데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1개의 총 5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합의에 실패하였다. 또한, 실질적 통합협정문을 만든 11개 분과의 경우도 양측 주장을 합의한 내용은 60%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섬유, 무역구제(미국의 반덤핑 조치 발동요건 강화)분야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농업,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 각각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측은 농업에 대한 안정장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측은 섬유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3] 유지를 주장하고,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유형의 상품이외에 법과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한국 경제 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각종 규제와 절차관행 등을 허무는데 협상의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상품의 개방단계,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한

---

1) 개방 유보안은 개방제외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7월 한국은 미국 측에 기간통신・전기・방송・법률 등 100여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서비스업 유보안을 전달하였다.

2)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설치된 작업반(working group)은 17개 협상분과와는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두 작업반은 '교역' 문제를 넘어 국내 법·제도의 직접적인 변경을 다루고 있음

3)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GATT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신금융 서비스 진출, 서비스 개방 유보안 교환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쌀 등 농산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2차 협상 최종결과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민간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할 것에 동의하였다.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혹은 10년 이후 관세 감축 및 철폐 등의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방기간은 섬유를 제외한 모든 제조 상품에 적용되며, 섬유와 농업부문 개방기간은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를 토대로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간 내에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의류 분야의 경우 최장 5년 내에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간 양허 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제외를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분과의 협상 결렬을 시작으로 자동차, 금융서비스, 우체국 금융업무 등에 대한 이견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분과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4]을 문제 삼아 협상을 중단하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이 보험금 지원 대상 약품을 제한하여 주요 신약 수출국인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 및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 미국 측의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금융서비스 분과의 경우 소비자 보호, 안정성, 금융 감독 등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을 동의하였고, 세부 금융서비스 업종은 3차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체국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우체국은 산간벽지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특별한 형태이고, 설립근거도 다른 만큼 수용 불가 입장 밝히고 있다. 통신 분과의 경우 현재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되어 있어 추가개방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먼저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4) 약가 적정화 추진 방안은 효과가 인정된 신약이라도 무작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약효 대 경제성(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 5월에 발표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

Phytosanitary Measures; SPS)[5] 분야에서는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위원회 방식을, 한국 측은 접촉선 지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이 지속되는 등 양국의 의견을 나란히 적는 수준에서 정리되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법률 재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현지법인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금융상품별로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데 합의했으며, 국경 간 거래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등 제3국 메이커의 자동차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원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은 서로 교환하여 양측이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 2-2〉 한·미 FTA 분과별 2차 협상내용 요약

분과	합의내용	한국 측 주장	미국 측 주장
농업	개방틀 미합의, 양허안 8월 중 교환	쌀시장개방 불가	쌀시장 개방
섬유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도입 등 미합의 개방틀 미합의, 양허안 8월 중 교환	5년 내 모든 품목 관세 철폐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도입
원산지·통관		65개 FTA에서 역외가공방식 인정한 사실 제시하여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관철/얀포워드 원산지 규정을 원단원산지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	개성공단 배제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반덤핑제소, 세이프가드, 슈퍼 301조 등 비관세 장벽 완화요구	법체계 정비 필요성과 FTA내 무역구제 협상 전례가 없음을 주장
위생검역	통합협정문 작성 완료 현행 위생검역기준 유지키로 합의/위생검역작업 형식에는 여전히 이견 존재	분쟁 시 양국의 접촉선 지정	분쟁 시 별도의 위원회 구성

5)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충해 등을 이유로 교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세계무역기구(WTO) 여러 협정 중 하나로, 교역금지대상 규모, 해제 절차 등이 분쟁거리가 될 수 있음. 실례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을 통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

기술표준			기술장벽(TBT) 완화
투자		세이프 가드 도입 및 자산유지 의무비율 제외	세이프 가드 도입 반대
서비스	11일, 유보안 교환	최소 100개 이상 유보안 제시할 예정	공교육과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에 무관심/미국대학시험(SAT) 및 온라인 교육에 관심 표명
금융 서비스	국경 간 거래, 신종금융 상품분야 제한적 개방 합의	미국에 소액금융 및 금융사 이사구성 제한 철폐 요구	우체국 금융 업무에 대한 동일한 금융 감독과 의무 부여/보험광고 심의 차별 철폐
통신 및 전자상거래		통신사업의 외국인 자본 49% 유지/기술표준단일화 지속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의 자율성 요청 및 정부 개입 금지
경쟁		수용불가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 도입 요구, 재벌에 경쟁법 적용 명시
정부 조달		학교급식,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예외조항 인정	미국 주정부 비합치 조항 포괄적 양허
지적 재산권		예외 없는 특허출원공개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오리지널 의약품 권리 주장
노동	PC 제도 도입 합의	국제기준 비해 과보호 권리는 조정	무역, 투자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금지의 범위
환경		신중검토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도입
총칙(분쟁해결·투명성)		접촉선 지정 방식	위원회 방식
상품 무역	개방기간 5단계로 구분(즉시철폐-3년-5년- 10년-10년 후 혹은 개방제외) 양허안은 8월 중 농업, 섬유와 일괄교환		
작업반 자동차	미국산 일본차 우회수입 방지 합의	픽업트럭 관세 인하 요구	세제 및 표준·기술과 소비자 인식 문제 공세 강화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약가 적정화 방안 이견으로 협상 중단		약가적정화 방안에 대한 우려 제기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주요 기사정리(2006. 7. 10~2006. 7. 15)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2005)

〈표 2-3〉 한·미 FTA 협상진행 일지

	1차 협상	2차 협상
기간	2006. 6. 5 ~ 6. 9	2006. 7. 10 ~ 7. 14 (※ 미국 측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종료예정일보다 1일 먼저 협상종료)
장소	미국 워싱턴 DC	한국 서울
참석자	김종훈 외 146명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웨디 커틀러 외 180명	김종훈 외 270여명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웨디 커틀러 외 75명(16개 부처)
주요 안건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장벽 부문을 제외한 15개 분과 개설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상품무역)	17개 분과 개설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상품무역, 정부조달 등)

2.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1)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에 있어 매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 시각은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식의 FTA를 한국이 체결하면 한·미 FTA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합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주로 KIEP를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많이 제시되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의 체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미국은 GDP 규모나 시장규모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경쟁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을 선점하여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신인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미 FTA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고, 이는 결국 외국인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고도기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선진 경영기술기법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한·미 FTA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문제가 FTA협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한·미 FTA는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개발이나 도입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한국경제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김세균(2006)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확고부동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하여 상시적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빈곤층 및 실업 층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운영 및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통해 공공서비스 부문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규제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시장논리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증대시킬 것이다.

부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이에 융합되어 있는 국내독점자본이 노동자, 농민의 절대적 다수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한·미 FTA의 체결은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발에 따른 환경재앙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 편입시켜 미국적 가치관과 상업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기대효과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 또한 매우 크다. 이는 물론 FTA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도 하지만 한·미 FTA가 그만큼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가 다양함을 시사한다. 한·미 FTA의 국민경제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많은 분석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략적인 측정을 위해서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다. CGE 모형이란 경제학의 이론체계를 모형으로 설정하고 주어진 기준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에 대한 계수를 보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부적인 충격, 예를 들어 정책변수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내생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대한 모의실험이다. 이러한 CGE모형은 기준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계수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지닌다. 또한 효과는 장기적인 균형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CGE 모형은 일반 균형 틀에서 정책의 효과를 모의 실험하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갖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6],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GDP가 전체적으로 1.99%~7.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스톡증가는 3.23%~10.21% 증가하고 후생증가효과는 68억 달러에서 28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각각에 대한 효과가 크게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후자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약 1%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

6) KIEP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바, GDP와 제조업 부문은 이홍식(2006. 3),『한 · 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서비스업은 이준규(2006. 3),『한 · 미 FTA의 효과: 서비스부문』을 활용함.

〈표 2-4〉 한·미 FTA의 파급효과(KIEF)

	시나리오I(생산성 효과 고려 안함)	시나리오 II(생산성 1% 증가)
GDP 증가	1.99%	7.75%
자본스톡 증가	3.23%	10.21%
후생증가	68억 달러	281억 달러

자료 : 이경태(2006),「한·미 FTA효과와 부작용」,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자본축적효과에 따른 수출입효과를 살펴보면 수출이 12.1%~15.1% 증가하지만 수입은 더 크게 상승하여 29.1%~3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는 42억 달러~41억 달러의 흑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한 · 미 FTA의 교역부문 경제효과

	CGE 자본축적모형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수 출	12.1% (54억 달러)	15.1% (71억 달러)
수 입	29.1% (96억 달러)	39.4% (122억 달러)
무역수지	42억 달러(흑자 감소)	51억 달러(흑자 감소)

자료 : 이홍식(2006),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중장기효과란 소득증대에 따른 자본축적효과를 고려

2)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1) 한·미 FTA의 부문별 효과

CGE 모형에 따른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생산성이나 GDP대비 비중이 떨어져 한·미 FTA 체결 시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3.5%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9만여 명의 농업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5.4%,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부문에서의 생산

과 고용은 각각 7.1%(35조원), 4.1%(46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 한·미 FTA의 부문별 경제효과

	CGE 자본축적모형			
	생 산		고 용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농업	△3.5% (△2.4조원)	△1.4% (△0.9조원)	△3.5% (△8만8천명)	△3.5% (△4만7천명)
제조업	1.4% (5.9조원)	5.4% (22.9조원)	1.1% (3만2천명)	4.6% (13만5천명)
서비스업	1.9% (9.3조원)	7.1% (34.7조원)	1.2% (13만7천명)	4.1% (46만3천명)
합계	1.3% (12.8조원)	5.7% (56.7조원)	0.5% (8만2천명)	3.3% (55만1천명)

주 1) 기본가정은 제조업 전면개방, 농산물 80%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감축하는 것임. 단 농업부문 쌀시장 개방은 제외됨.
2) 생산성 증대가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부분에 1% 생산성 증가
3) 생산액에 적용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적용

자료 : 이홍식(2006),「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하지만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CGE모형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백일(2006)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11.9%이고 미국은 4.9%로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7% 정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한국은 관세율이 5~10%에 달하는 고관세율 품목이 61%정도로 대세를 차지하고 미국 측은 반대로 무관세율 품목이 45%이며 나아가 관세율이 5% 이하인 품목이 70%에 달한다. 따라서 미국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은 관세율을 내릴 여지가 그만큼 많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출을 늘리기 보다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한미산업별 관세율

(단위:%)

산업	한국	미국
농산물	46.2	9.8
석유류	5.8	2.2
섬유/의류	9.8	9.2
가죽/신발류	8.9	7.0
금속	4.7	1.9
화학제품	6.0	3.6
기계	6.0	1.3
전자	5.5	2.0
자동차	8.0	2.5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비교우위품목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2.5%로 관세율이 인하된다할지라도 대당 300달러에 불과해 과연 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의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8%이고 각종 부가세금을 합하면 10%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의 관세율이 인하 된다고 하면 수입증대효과는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특히 대형·고급완성차나 오토트랜스미션 등 첨단부품에서의 수입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경우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섬유류이다. 섬유류의 미국관세율이 9.2%에 이르고 특히 10% 이상 고관세 품목이 총 섬유류의 36.6%에 이르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매우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섬유부문에 있어서 높은 관세율을 부여할 만큼 시장보호의 의지가 커 실제로 우리의 기대대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각종 원산지규정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한·미 FTA의 협정에 따라 섬유부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전자부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요 전자제품은 무선통신기기·반도체로서 실제로 반도체의 경우 관세율이 양국 모두 무관세이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전자부문에서 한·미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계관세인데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든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철강부문도 무관세이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의 비관세장벽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러한 부문에서의 타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산업별로 한·미 FTA가 수출입에 미칠 효과에 대한 무역연구소의 FTA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산업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미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은 기계류, 석유화학, 의약품 및 화장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표 2-8>).

〈표 2-8〉 한·미 FTA의 제조업 품목별 영향

구분	대미수출		대미수입	
	효과	주요 사항	효과	주요 사항
자동차	大	판매가격 인하 마케팅 강화	小	미국산 선호도 낮음
전자제품	中	관세인하 효과 작음	小	IT제품 이미 무관세
기계류	小	관세인하 효과 작음	大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 의료기기 수입증가
석유화학제품	中	관세인하 효과 큼 미국의 산업보호 의지 강함	大	고부가 합성수지 수입증가
의약품	小	선진국 수출기준* 미충족	大	원료수입의존도 90%
화장품	小	이미 무관세, 저관세	小	미국산 선호도 낮음
섬유 및 의류	大	546개 품목에 10% 이상 관세	-	
가죽 및 가죽제품	大	관세인하 효과 큼	小	관세인하 효과 작음

주 : 선진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임. 현재 국내 제약업체 500여개사 중 200개사만이 GMP를 준수하고 있으나 이중 30개사 정도만 미국의 GMP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

자료 : 무역연구소 FTA팀. 2006. 「한·미 FTA와 제조업」을 기초로 작성

종합하여 보면 한·미 FTA에 따라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효율성 증대나 기술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7)]

한·미 FTA를 체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들고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산업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경제 선진화의 한계에 부딪쳤을 뿐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인식하에서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한·미 FTA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나 생산성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은 33억 달러(2003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대미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총수출의 28.3%)이고 수입은 127억 달러(총수입의 31.4%)로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가 총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 FTA는 서비스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준규(2006)에 따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증가가 예상되며, 서비스업에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으로 국제화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생산총생산은 2.1조~9.4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5만~17.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소득증대에 따른 자본축적의 효과까지 포함하면 이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 이준규(2006. 3), 『한·미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을 기초로 작성함.

(<표 2-9>참조).

〈표 2-9〉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부문 효과

	단기(정태)효과		장기(동태)효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생산	2.1조 원	9.4조 원	3.3조 원	15.9조 원
고 용	5만 명	17.1만 명	7.8만 명	28.9만 명

자료: 이준규, 2006,「한·미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이홍식(2006)은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면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가 및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에서의 아웃소싱 현상은 단순히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아웃소싱국가로서 미국기업의 90% 이상이 아웃소싱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부문은 기존의 생산과 단순 업무 위주에서 최근 들어서는 IT와 비즈니스 서비스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함께 선진국들의 아웃소싱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아웃소싱국가인 미국과의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와 그에 따른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부문의 아웃소싱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가 및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아웃소싱이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기업들도 인도 기업들과 같이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천(2006)은 위와 같은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의 기대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개방은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잘못 단행된 개방은 큰 위험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협정상 이행의무 부과조항 금지 때문에 경영 노하우 등 선진기법의 이전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제자본이 서비스 분야를 지배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부문은 도태되어 국내 서비스의 자율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는 반(反)경쟁효과와 신규투자보다 M&A가 주로 나타날 반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전문적 서비스의 특성상 양질의 대량고용이 창출될 근거도 희박하다. 가장 분명한 '기대 효과'는 금융의 투기화와 종속화의 심화이다. 그때는 론스타 같은 사태가 속출해도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투기화와 주주가치 압박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의 약화와 투자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메커니즘을 작동케 하는 요체, 즉 당면 한국서비스산업 수입대체 정책의 요체는 적절한 개방과 더불어 투자 창출과 인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관리·유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방속도와 순서의 적절한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개입과 관리, 그리고 여러 투자를 창출하고 효과적 경쟁이 작동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제도적·규제적 틀이 결합될 때 비로소 산업고도화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시장 개방에 내재된 조절 실패와 위험을 극복하는 훨씬 차원 높은 경제적·사회적 협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과 발전전략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

즉 서비스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개방은 오히려 서비스 산업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II. 외국의 사례

1. 캐나다·미국 FTA

1) 교역 증가 및 경제성장률 소폭 증가

NAFTA 이후 평균 성장률 증가 및 실업률을 살펴보면, NAFTA 출범 이후 첫 10년간 경제성장률은 NAFTA 출범 이전 10년간 경제성장률 2.6%를 상회하는 3.5%에 달했다. 1990년대 캐나다의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경제호황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NAFTA 출범 이전(1989~1993년) 평균 9.7%에 달했던 실업률은 NAFTA 발효 이후 점차 떨어져 2000년에는 6.8%까지 하락했다.

또한 NAFTA 출범 이후 10년(1994~2003년)간 캐나다의 수출은 역내 수출 증가로 연평균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내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15%에 달해 역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6.5%를 크게 능가했다.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10년간 캐나다의 수입도 연평균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내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11%를 기록한 데 반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14.8%에 달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10.3%를 기록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의 역내회원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1993년 160억 달러에서 2003년 6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무역흑자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는데, 1993년 180억 달러에서 2003년에 7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로 산업 내 무역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반해 캐나다는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198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NAFTA 출범 이후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확대되어 1993년 20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80억 달러에 달하였다.

2)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는 미미

NAFTA 출범 이후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대캐나다 FDI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1993년 64.0%로 캐나다 FDI 누계에서 차지하던 미국의 위상은 협정 출범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2002년 말 현재 64.2%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FDI 실행국으로 멕시코의 위상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미미했다. 또한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기존 캐나다기업의 인수에 불과했다. Kairos(2003)는 CUSFTA 및 NAFTA 출범 이후 절대규모면에서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신규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캐나다기업의 인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1985년 6월~2002년 6월 동안에 10,052개의 캐나다 기업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는데 이 중 미국기업이 6,437개를 인수하였으며, 캐나다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 중 96.6%가 인수투자였고, 3.4%만이 신규투자였다고 한다.

3) 실질임금 하락, 복지 축소, 농업 다국적 기업에 통합

NAFTA 출범 이후 생산성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Kairos(2003)의 분석에 따르면 1993년 6월~2002년 6월 기간 중 캐나다의 제조업생산성이 NAFTA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기간 캐나다의 누적 생산성 증가는 14.52%에 그친 반면에 미국은 51.98%, 멕시코는 53%에 달했다. 즉 CUSFTA나 NAFTA체결 이후 당초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의 제조업생산성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한편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노동비용은 하락하는 등 생산성 증가 이득이 노동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있다. 1993년 6월~2002년 6월 기간 중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모두에서 노동비용이 하락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NAFTA 3국 모두에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득이 노동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였고 나름대로 높은 수준이라 자랑하던 복지도 대폭 삭감됐다.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21.6%였다가 2001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회원국 평균치

가 21.8%에서 20.8%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캐나다의 감소폭이 4배 가까이 더 크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비율도 1989년 75%에서 2002년에는 38%로 뚝 떨어졌다. 보건의료예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에서 미국과의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

게다가 캐나다 농업협동조합이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통합되고 있다. 사스카츄휘트풀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길이 서부지역 곡물의 75%를 통제하고 있으며 아처다니엘스는 캐나다 밀가루 제조시설의 50%에 달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콘아그라는 캐나다 맥아제분 공장시설의 64%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카길과 육류포장업체인 IBP는 전체 캐나다 육류 포장공장 2/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멕시코·미국 FTA

1) 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무역량과 무역수지만을 살펴본다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 이후 역내외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 무역수지 흑자의 이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무역량의 측면에서는 멕시코는 지난 10년(1994~2003년)간 멕시코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6.4%에 달해 NAFTA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회원국과 달리 같은 기간 역내 회원국에 대한 수출(연평균 26.1% 증가)보다 역외국에 대한 수출(연평균 28.2% 증가)이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멕시코의 역외수입증가율(27.7%)이 역내수입증가율(14.1%)을 앞섰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미 수입증가율이 대캐나다 수입증가율을 앞서긴 했지만 어느 회원국에 대한 수입증가율도 역외수입증가율을 상회하지는 못했다. 한편 무역량 증가와 함께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는 역내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흑자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1994년까지 적자에 머물던 미국과의 교역은 1995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규모는 200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0억 달러대를 상회했다.

그러나 NAFTA가 회원국 간의 무역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

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무역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NAFTA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페소화 위기로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수출경쟁력이 증가했던 점과 다른 여러 요인들이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Lederman, Maloney & Serven(2003)은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NAFTA가 회원국 간의 무역흐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무역전환효과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의 수출산업기반은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됨으로써 미국과의 FTA가 산업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총수출대비 제조품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NAFTA 발효 이후 수출품 다각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NAFTA 발효 이전(1980~1993년) 연평균 37%에 불과하던 총수출대비 제조품 비중은 NAFTA 출범 이후(1994~2002년) 80%로 크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신흥개도국 중 가장 다변화된 수출입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에 대한 FDI 유입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NAFTA 출범 이전 연평균 40억 달러, 1989~93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에 그쳤던 대멕시코 FDI는 NAFTA 협상이 개시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협정 발효 첫 해에는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NAFTA 출범 이후 대멕시코 FDI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도해왔다. 멕시코의 FDI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94년 46.7%에서 출발한 후 점차 증가해 2003년 말 현재 64.4%에 달했다. 그러나 역외국으로부터 멕시코로의 FDI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써 대체로 회원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투자확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 멕시코 내부의 산업연관체제 몰락으로 저성장, 고용여건 악화, 농업의 위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역량 증대, 외국인직접투자에도 불구하고 NAFTA 출범 이후 첫 10년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적은 NAFTA 출범 직전 경제성장률인 연평균 2.5%와 유사하다. 즉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경제가 경제통합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높은 성장세를

실현하는 듯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NAFTA 출범 이전의 경제실적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이렇게 NAFTA 이후 수출 및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저조한 이유는 NAFTA 이후 멕시코 내부의 산업연관체제 몰락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들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만 활용할 뿐 대부분 원부자재와 부품을 중국 등 멕시코 이외 지역에서 들여왔다. 그로 인해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나 98년 이후 한 번도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수출증가는 멕시코의 값싸고 불안한 노동을 이용하려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미국시장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변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하나밖에 없고 그 외는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즉 미국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부품을 들여 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을 증가시킨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의 이익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중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 이윤과 배당의 형태로 되돌아간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인수합병 방식이었기 때문에 90년대 멕시코로 흘러든 외국인 직접투자 중 순수하게 총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자본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멕시코에 유입된 자본이 총고정자본 중 12.9%(2000년 기준)인데, 4.9%는 이윤 배당 등의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의 고용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NAFTA 출범 이전(1989~1993년) 평균 6.9%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NAFTA 발효 직후 페소화 위기 영향으로 11.2%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8.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동반 침체로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4.9%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NAFTA 출범 이후 실업률이 더욱 낮았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것은 실업자의 의미를 엄격하게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 하락했다는 점일 것이다. World

Bank(2003)와 Audley 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페소화 위기 발생 이후 멕시코에서 실질임금은 25%나 하락했다. 실질임금은 단지 1997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NAFTA 출범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소득정체는 멕시코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NAFTA 발효 후 2005년 말까지 멕시코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68%나 증가했는데도 노동비용은 31% 감소했다. 기업의 이윤은 크게 늘었지만 노동자 몫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또한 산업, 지역,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어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은 1984년 49.5%에서 1992년 54.2%, 1998년 54.1%로 증가했다. 반면 하위 80%가 차지하는 소득은 1984년 50.5%에서 1998년 4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으나 지역이나 집단을 세분화해서 보면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더욱 확연하다.

농산물 수출입에 대해 살펴보면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다. 멕시코는 1995년을 제외하고 NAFTA 출범 이후 미국과 농업부문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NAFTA 출범 이전에도 무역적자를 보이기는 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2002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NAFTA 발효 전 60억 달러였던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2년 연평균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멕시코산 채소와 화훼류 등의 대미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크다. 멕시코 국민들이 한 해에 소비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가운데 수입품 의존율은 1994년 20%에서 2004년 48%로 치솟았다. 멕시코의 농업이 이렇게 피폐해지게 된 원인으로는 NAFTA이후 정부의 지원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시사점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국별 특수성이 존재하여 각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캐나다·미국 FTA와 멕시코·미국 FTA 중 어느 것에 가까울 것인가를 고려해 보면 소득수준 격차나 경제발전 격차에 비추어 볼 때 멕시코·미국 FTA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험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NAFTA 이후 미국과의 교역증가,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면에서는 그리 효과가 없었던 점일 것이다.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본이 마낄라도라 지역에 공장을 세워 멕시코를 노동집약적 수출기지화 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중국 및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하는 조립기지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산업연관체제가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낄라도라 지역의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비마낄라도라 고용 및 농업에서의 고용은 더욱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실질임금은 감소하였고,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멕시코의 경험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즉 교역이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성장증가, 고용증가, 국내산업 고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멕시코와 동일하게 조립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증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이전되고 국내산업과 연관체제가 자동적으로 깊어져서 국내경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할 수 없다. 한편 미국경제와의 개방, 세계경제와의 급속한 개방이 국내산업연관체제의 몰락, 그로 인한 고용상실,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충남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멕시코 8주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Confederation of Industrial Chambers of Commerce (CONCAMIN)의 연구에 따르면 NAFTA 이후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NAFTA가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Tamayo - Flores(2000)의 연구에서도 남쪽 주들과 북쪽 주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와 같은 정도의 지역 간 격차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미 FTA 이후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Ⅳ. 지역경제 효과 분석

1.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의 제조업에 대한 영향

(1) 한·미 간 제조업의 교역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로서의 위치를 상당한 기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3번째 교역국으로 저하되었다. 2005년에는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413억 달러와 306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미 교역이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4.5%, 수입의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 교역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중 및 대일 교역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표 4-1〉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출		수입		수출-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7,611	27.6	29,242	17.3	8,369
2001	31,211	-17.0	22,376	-23.5	8,835
2002	32,780	5.0	23,009	2.8	9,772
2003	34,219	4.4	24,814	7.8	9,405
2005	42,849	25.2	28,783	16.0	14,067
2005	41,343	-3.5	30,586	6.3	10,75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4-1〉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교역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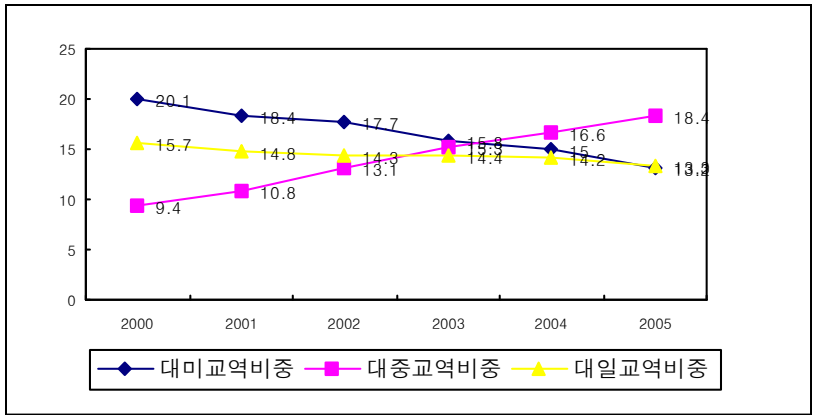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품목별 교역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3대 수출품은 자동차(21.1%), 무선통신기기(14.1%) 및 반도체(8.7%)로 2005년 기준 대미 수출의 43.9%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석유제품 5.2%, 자동차 부품 5.0%, 컴퓨터가 3.3%를 차지하는 중화학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88.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3대 수입 품목은 반도체(18.6%), 반도체 제조용 장비(7.4%), 항공기부품(7.4) 이고 중화학제품의 수입 비중이 83.4%를 보인다.

〈표 4-2〉 2005년 한·미 주요 수출입품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자동차	8,736	21.1	반도체	5,692	18.6
무선통신기기	5,838	14.1	반도체제조용장비	2,274	7.4
반도체	3,630	8.7	항공기 및 부품	1,646	5.3
석유제품	2,172	5.2	계측제어분석기	1,170	3.8
자동차부품	2,101	5.0	컴퓨터	781	2.5
컴퓨터	1,369	3.3	정밀화학 원료	749	2.4
의류	1,046	2.5	곡식류	726	2.3
철강판	815	1.9	원동기 및 펌프	659	2.1
고무제품	799	1.6	기초유분	600	1.9
총계	41,343	100.0	총계	30,5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다음으로 미국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미국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

나다(17.2%), 중국(14.5%), 멕시코(10.1%) 등이 있고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입국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은 FTA 체결국과의 역내 교역비중을 증가시키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그림 4-2〉 미국에 대한 수출국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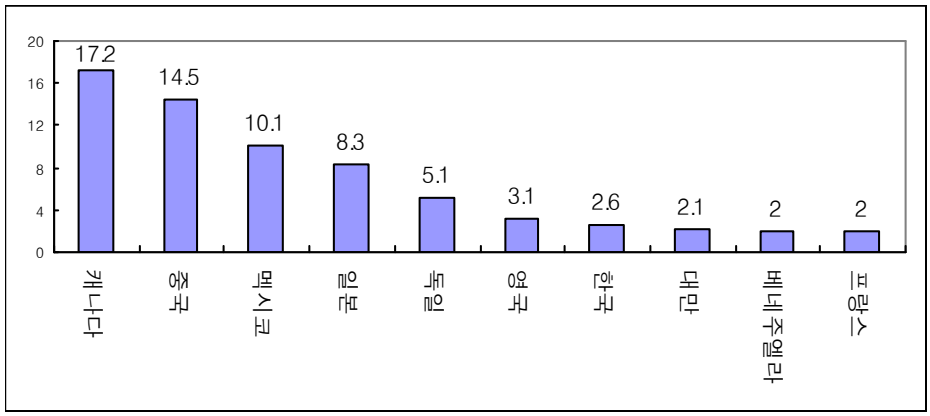

(2)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성 증대 및 기술파급효과 등을 통해 경제고도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3〉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신고액 기준

(단위: 억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국인 직접투자액	152.2	119.2	91.0	64.7	128.0	116.0
서비스업 비중	-	50.3	61.05	63.3	56.0	72.5

자료: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중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중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비중을 압도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업종 내에서 금융, 보험 부문의 FDI 비중이 52%이고 물류와 비즈니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 미국의 대한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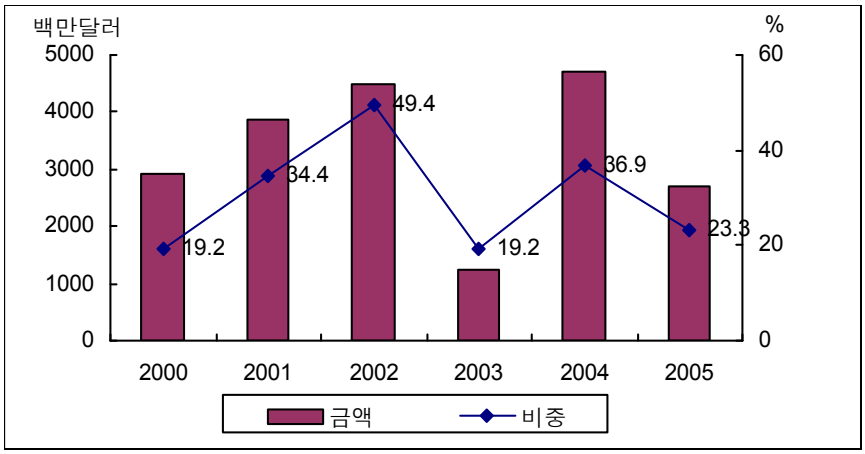

투자국별로는 미국이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1962년 이후 미국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직접투자국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4년 47억 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5년에는 26.9억 달러로 하락하였고, 국가별 비중도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에 미국의 서비스업 직접투자는 2002년을 제외하고 전체 산업에서 70~80%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미 FTA로 직접투자가 증가할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별 직접투자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962~2005
농·축·수산업 및 광업	-	-	-	-	-	156
제조업	259	220	71	323	571	6,549
서비스산업	746	313	496	2,747	1,409	9,311
도·소매(유통)	363	88	166	61	46	2,190
금융·보험	202	112	160	2,549	1,007	5,048
부동산·임대	34	38	100	35	25	310
비즈니스서비스산업	93	67	62	82	240	1,089
전기·가스·수도·건설	2	47	4	-	25	421
합계	1,007	580	571	3,070	2,004	16,437

자료: 현혜정·이성봉(2006)

(3) 예상되는 제조업관련 주요 이슈

①관세양허안

양허카테고리는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및 기타(undefined)[8]로 구별 하였으나 농산물/섬유분야는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없이 양측이 각각 작성하여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일수록 관세철폐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섬유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보다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호주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 관세 양허를 보면 미국은 공통적으로 관세철폐기간을 즉시철폐, 4년, 8년,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별로 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칠레, 호주와의 FTA에서 각각 12년과 18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국가와 상관없이 유사하였으며,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다른 여러 형태의 관세인하 일정을 정하였고, 섬유, 가죽제품 및 신발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8) 기타에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표 4-5〉 미국·호주 FTA의 미국 관세 양허

산업	즉시철폐	4년 후	8년 후	10년 후	무세적용	18년 후	기타
농림수산업	206	41		31	237	11	26
광업	19		1		78	25	
음식료품	463	105		74	257	81	361
섬유 및 가죽제품	441	1		17	221		
목재 및 종이제품	50		1		311		
인쇄, 출판 및 복제	6				45		
석유 및 석탄제품	37				18		
화학제품	1,417	7	2		604	2	9
비금속광물제품	134	18	18	9	97		6
1차 금속	548		1		110		2
금속제품	228	19			113		
일반기계	227	15	1		391		
전기전자기기	379	7	5		388		
정밀기기	136	7			154		1
수송장비	291	5	2		141		
가구 및 기타제조업	147	1			166		5
합 계	4,729	226	31	131	3,331	119	1,331

자료: 정재호(2006)

②조정관세 적용배제

우리나라 관세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조정관세를 양국 간 교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조정관세란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년) 동안 기본관세 이외에 부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감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고관세를 유지하여 왔다.(2006년 운영품목: 수산물 10, 농산물, 6, 공산품 2) 미국은 조정관세는 임시적인 성격이므로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배제해달고 요구하고 있다.

③비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금지

미국의 비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금지 주장이다. WTO의 규범에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원재료가 수입될 때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역내산이 아닌 경우에는 동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 환급제도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이므로 미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④자동차 세제

미국은 배기량 기준 3가지 자동차세제(특소세, 자동차세, 공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연 세수는 2조원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정책상의 필요와 세수손실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⑤섬유부분

우리나라는 섬유부분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조기철폐(전 품목 5년 내 철폐)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자국 업계의 적응기간 마련을 위해 중·장기철폐를 시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역외산 원부자재 소싱을 허용하는 단일실질변형기준을 주장하는데, 단일 실질 변형기준이란 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주요 공정이 역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기준이다. 미국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사기준(Yarn Forward : YF)을 주장하는데 YF기준이란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사생산부터 최종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요구하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반대하지만 미국은 섬유가 민감품목 임을 강조하여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⑥원산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역내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양국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역내 부가가치계산법으로 공제법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은 집적법과 공제법의 선택 사용을 주장한다.

▪ 공제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 = ((물품가격-역외산 재료비)/물품가격)×100

▪ 집적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 = (역내산 재료비/물품가격)×100

〈표 4-6〉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

	주장 내용	주장 배경
우리나라	공제법만 사용	직접법 선택 시 역내산인 모든 재료의 원가를 공개해야하므로 기업의 영업기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미국	집적법과 공제법의 산택사용	수출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무역 원활화를 추진

㉡자동차 원산지 기준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여는 순원가법[9]의 부가가치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순원가법 도입 시 회계사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순원가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산과 관련이 없는 마케팅, 운송비용 등 부가가치계산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가격

역내 부가가치 기준가격으로 우리나라는 공장도 인도가격(Ex-works Price)을, 미국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주장한다.

㉣개성공단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의 하나로 포함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나,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⑦통관절차

9) 순원가법에서의 역내부가가치 =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비용)/순원가}×100

㉠원산지검증방식

원산지검증제도는 우회수출입 및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직접검증방식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 대신 조사하는 방식인 간접검증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검증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자 하나, 미국은 직접검증방식 이외에 간접검증방식은 국내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원산지증명방식

원산지증명제도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1차적인 절차로서 수출자의 자율증명제와 당국이 증명하는 기관증명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 증명제도를 도입하되, 원산지증명서는 양국 간 통일서식의 사용을 제안하는 반면에, 미국은 원산지자율증명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의견이 동일하나, 원산지증명권자를 수출자 이외에 생산자와 수입자까지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입자 자율에 맡기는 자율서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미 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 완화

미세관은 안보검색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을 체결하여,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SI에 따라 수출 전 세관검사를 받은 품목에 대해 미 세관의 통관검사 생략, 긴급수출입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서비스 등 제공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CSI 보안검색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 법률체계상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검사 면제를 명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복청구권 인정범위

수입국 세관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행위로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그 당사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도 불복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수입자 이외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는 불목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⑧무역구제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 가드 조치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부 FTA의 경우 관련국이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체결한 예가 있는데,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의 큰 애로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6월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14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및 상계관세 1건으로 총 19건이다.

㉠반덤핑제도

우리 수출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필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덤핑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내용도 반덤핑 조치의 과도한 남용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 발동 요건 강화 및 발동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법상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를 이유로 협상의 대상으로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WTO상 세이프가드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한미 양국 간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력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므로 상호 적용 배제는 우리 수출제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닌 경우 상호 적용의 배제를 주장이고, 미국은 WTO상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제도

WTO 상 세이프가드 제도이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입급증 시 별도의 조치인 양자 간 세이프가드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WTO 상 세이프가드 상호 적용 배제를 전제로 농·수산품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동일 품목에 대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발동의 허용을 주장한다. 미국은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없도록 존속기간을 도입함과 동시에 동일 품목에 대한 재발동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표 4-7〉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조치(2006.6월 현재)

규제형태	품목	최근의 규제내용	03년 수출실적 (백만불)
반덤핑 (AD)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06.5.16 규제확정공고	21.8
	폴리비닐 알코올	0.9.12 ITC 긍정 최종판정	0.6
	PC 강선	04.1.21 ITC 긍정 최종판정	8.5
	PET 필름	05.10.20 AD 지속판정	59.7
	스탠다드 강관	04.6.10 AD 연례재심 최종판정	20.1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05.9.10 ITC 피해 지속 판정	15.1
	스테인레스강관 이음쇠	05.10.21 일몰재심 지속판정	3.2
	유정용 강관	02.3.19 AD 연례재심 최종판정	54.5
	스테인레스 선재	05.10.25 연례재심 실시	1.6
	스테인레스 봉강	02.3.7 AD 최종판정	1.1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05.8.4 상무부, 일몰재심 지속판정	128.6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스테인레스 엥글	06.4.3 일몰재심 실시	-
	철근	05.10.25 연례재심 실시	0.0
	스테인레스 열연후판 코일	03.2.26 AD 환송심 최종판정	-
	금속제 주방용품	05.11.17 반덤핑 지속	30.1
상계관세 (CVD)	철강후판	05.8.8 상무부, CVD 지속판정	2.5
	철강 판재류	04.9.22 연례재심 개시	106.3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코일	05.8.8 상무부, AD, CVD 지속판정	1.1
	반도체 D-Ram	03.8.11 확정 상계관세 부과명령	503.1

미국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는 1987년 이후 7건의 반덤핑과 6건의 세이프가드만 발동되었고 상계관세는 없었다.

〈표 4-8〉 한국이 미국상품에 취한 무역규제 조치(1987～현재)

규제형태	품 목	조치내용		참 고
		관세율(%)	부과기간	
반덤핑	폴리아세탈수지	4	91.9.30~93.8.30(2년)	
	리튬 1차 전지	5.25~49.69	96.9.2~99.9.1(3년)	
	유리장섬유	10.3~58.7	94.4.12~01.4.11(13년)	5년 부과 후 3차례 재심
	에탄올아민	20.07~33.84	96.7.10~01.7.9(5년)	
	염화코린	33.83~49.6	96.9.2~01.9.2(5년)	
	리튬 1차전지	18.19	04.7.30~05.7.21	부과 중 관세부과 철회요청에 따라 조치 철회
	염화콜린	22.19	04.10.20~09.10.19(5년)	현재 부과 중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 인상 (30→50)	90.5~93.6.30	
	초산에틸	수입자제 권고	90.2~92.12.31	
	활석분	관세율 인상 (10→30)	91.4~93.6.30	
	팝콘 옥수수	국산품 우선구매	91.7~93.1.28	
	대두박	수급자율협의 유도	94.9~96.12.31	
	대두유	관세율 인상 건의 (8→25)		한미 간 협상으로 시행포기

⑨무역관련 기술 장벽

무역관련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하여 국제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의 하나이다.

㉠기술규정 및 표준 등의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우리나라는 기술규정, 표준 제·개정 등의 참여는 내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과정에만 상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협의되고, 미국은 우리의 제·개정 과정에 자국인의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MRA는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MRA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며, 미국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MRA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협정의 적용범위

우리나라는 협정문의 적용범위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은 협정의 범위를 중앙정부에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민간기구의 적합성평가 절차

우리나라는 민간인증도 강제규정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양국 간 교역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4)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평균관세율은 한국이 11.9%와 미국이 4.9%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7%가 높은 실정이다.

〈표 4-9〉 한·미 양국의 주요 품목별 관세율

산업/품목	한국	미국
농산물	46.2	9.8
석유류	5.8	2.2
섬유/의류	9.8	9.2
가죽/신발류	8.9	7.0
금속	4.7	1.9
화학제품	6.0	3.6
기계	6.0	1.3
전자	5.5	2.0
자동차	8.0	2.5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은 관세율이 5~10%인 고관세율 품목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미국은 무관세품목이 45%이며 관세율이 5%이하인 품목의 비중이 70%를 차지한다. 관세율 격차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FTA로 관세철폐 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증대 현상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0〉 관세율 수준별 산업

관세율	한국	미국
8% 이상	음식료, 섬유, 자동차, 요트, 조선기자재	음식료, 섬유, 상용차
5~8%	화학,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전, 정밀기계	-
2.5~5%	목재가구	목재가구, 화학, 금속제품, 전기기계
0~2.5%	통신기기	일반기계, 가전, 통신기기, 승용차 및 부품, 요트, 선박용 엔진, 정밀기기
0%	제지인쇄, 철강, 전자부품, 항공기, 상선	제지인쇄, 철강, 전자부품, 항공기, 상선

자료: 산업연구원

제조업 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공산품에 대해서 저관세 구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A 협상의 타결로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가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체결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섬유·의류, 신발,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으로 이들 업종은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의 특징과 함께 특정품목의 대미수출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이다.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 정밀화학, 일반기계 등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음식료와 같이 경쟁적 분업구조에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비교열위인 업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위축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국내업체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사업체로 약 300여개 업체가 존재하는데, R&D투자는 매우 미미하며 주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교역관계에서의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목재가구, 제지인쇄, 석유화학, 철강, 가전, 전자부품, 항공기, 조선, 정밀기기 등으로 철강, 전자부품의 경우처럼 무관세업종이거나 교역규모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 섬유, 자동차, 통신기기,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폭적인 수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4-11〉 한·미 FTA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영향

업종	분업 구조	전체 경쟁력	FTA영향	비 고
음식료	경쟁적	비교열위	부정적	·전체적으로 경쟁력 열위 ·미국은 저렴한 자국산 원료(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가격 및 품질우위
목재가구	보완적	비교열위	중립적	·한국의 대미 수출품인 가국의 미국 관세율은 0% ·한국의 대미 수입품인 목재 원자재의 한국 관세율은 2%
섬유	보완적	비교열위	긍정적	·대미 수입품은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가제품

				·산업전반의 경쟁력수준은 비교열위지 만,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범용품의 높 은 경쟁력으로 인해 대미수출에 긍정적
석유화학	보완적	비교열위	중립적	·범용품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적자 ·무역은 수급 갭(범용품), 기술력(고부가가치제품)에 의해 결정
정밀화학	보완적	비교열위	다소 부정적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도 높아
금속제품	보완적	비교열위	중립적	·무역규모 미미(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금속제품의 비중은 0.5%-0.8%)
일반기계	보완적	비교열위	다소 부정적	·수출창출 가능분야: 가공공작기계, 볼 베어링 등 미국의 관세율(8%)이 높은 중소 기업형 분야 ·수입확대 분야: 반도체 장비 중 8%의관세율 적용분야,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터빈, 압축기 등
전기기계	보완적	비교열위	다소 긍정적	·수출증대효과가 수입증대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
가전	보완적	비교우위	중립적	·현지 생산으로 수출은 미미한 증가 ·피해 예상품목도 미미한 수준
통신기기	보완적	비교우위	다소 긍정적	·관세효과만 고려 시 중립적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통신기술 및 표준협상 시 긍정적 효과 기대
자동차	보완적	비교우위	다소 긍정적	·한국의 높은 수출특화도(0.907)
조선	보완적	비교우위	중립적	·상선은 무관세 ·Infaltable(고무보트)은 수출증가 가능 ·레저용 보트는 한국 개발 초기단계
정밀기기	보완적	비교열위	중립적	·통신용 계측기 등 일부 경쟁 품목에서는 FTA로 인한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이 공존

자료: 산업연구원

①자동차 산업

한국 자동차(승용차)의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50% 가량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있어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표 4-12〉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미 수출(A)	5,036	5,883	6,930	8,301	10,029	8,591
대 세계 수출(B)	11,896	12,029	13,467	17,536	24,632	27,256
A/B	(42.3)	(48.9)	(51.5)	(47.3)	(40.7)	(31.5)
대미 수입	29	31	64	65	65	93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대부분 무관세 혹은 2.5%로 관세가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SUV 차량의 수출 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5톤 이하 트럭(픽업트럭)의 경우 25%의 고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측되고 있지만 픽업 트럭류는 국내 기업이 별로 생산하지 않고 있고, 미국 기업이 장기간 이러한 품목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왔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특별한 수출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미국산 대형승용차의 적지 않은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 증대부문은 대형/고급 완성차와 첨단부품이다.

〈표 4-13〉 한·미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예상효과

효 과	내 용
긍정적 효과	· SUV 등 최신 유행 차량에 대한 수출 증대 · 조지아 현지 생산 공장 설립 등으로 부품수출 증대 · 미국의 대한 투자의 확대로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미국계 수직 아시아 부품기지화 확산
부정적 효과	· 대형/고급 완성차와 고급첨단 부품 수입 증대 · 수출자율규제 등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도입 · 미국계 대형 부품업체에 의한 중소부품업체의 급격한 구조 조정 · 자동차산업의 취약한 소유구조로 인한 적대적 M&A의 표적임 됨

②전자

전자부분의 대미 수출액은 2005년 기준 145억 달러인데,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가 95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이 대미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그중 휴대폰과 컴퓨터가 중요하고, 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에어컨이 중요하며 전자부품에서는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4〉 전자제품별 대미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산업용	7,052	2,926	7,928	2,680	10,339	2,704	7,834	3,289
가정용	2,552	293	2,586	323	2,645	324	2,264	349
부품	4,097	5,033	3,836	5,563	5,070	6,205	4,362	6,0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의 핵심수출 품목은 반도체인데 현재도 반도체부문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이므로 관세율인하에 따른 수출증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가전제품에 대한 평균관세가 약 2%에 불과하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NAFTA에서 우회 생산 된 가전제품의 역수입(TV 등 한국 측의 주요 가전제품 수입관세율 8% 철폐 시 타격) 증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문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 상계관세(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등 비관세장벽이 초미의 관심사이나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비관세장벽은 가장 타결이 어려운 부분이다.

③섬유 및 의류 산업

섬유 및 의류산업의 대미수출은 2005년 기준으로 2억 2700만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우리의 대미수출은 하락하고 있으며, 다른 대책이 없는 한 하락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류는 대부분 고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FTA로 관세가 인하되

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등 경쟁국의 존재 때문에 수출증가 효과가 크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증대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필요하다.

2) 충남의 제조업에 대한 효과

(1) 충남 제조업의 현황 및 수출입 구조

최근 충남은 북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 GRDP, 제조업 생산액,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와 수출입 등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남 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충남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도 이러한 충남지역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5〉 충남의 경제현황

구 분	전 국		충청남도	
	1999	2004	1999	2004
지역내총생산(십억원)	527,603	786,362	25,915	43,236
인구(천명)	47,543	49,053	1,926	1,973
1인당 GRDP(만원)	1,110	1,603	1,345	2,192
사업체수(개)	2,927,330	3,189,890	118,552	123,445
수출액(백만불)	143,686	253,845	11,185	29,272
경제활동인구(천명)	21,666	23,370	911	940
취업자(천명)	20,291	22,557	874	921

-자료: 통계청,「지역 내 총생산」,각 년도

①충남의 산업구조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4년 충남은 농림어업 9.4%, 광공업 42.5%, 서비스업이 48.1%를 점유하고 있다. 동기간 전국의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3.8%, 광공업 31.0%, 서비스업 65.2%를 나타내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북부권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내륙과 해안으로는 농림어업이 발달해 있어 전국보다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져 1995년 5조 1,240억에서 2004년 14조 530억원으로 연평균 10.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충남 서북부권으로의 산업집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십억 원, %)

년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95	18,763 (100.0)	2,654 (14.1)	128 (0.7)	5,124 (27.3)	10,856 (57.9)
2001	26,617 (100.0)	3,147 (11.8)	125 (0.5)	10,135 (38.1)	13,210 (49.6)
2003	30,871 (100.0)	2,968 (9.6)	188 (0.6)	12,366 (40.1)	15,349 (49.7)
2004	33,422 (100.0)	3,148 (9.4)	151 (0.5)	14,053 (42.0)	16,070 (48.1)

자료: 통계청,「지역 내 총생산」,각 연도

② 충남의 제조업 특화도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4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4.4%), 화합물 및 화학제품(15.5%)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12.3%)가 중요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 4-17〉 충남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95	'00	'04	'95	'00	'04	'95	'00	'04	'95	'00	'04
제조업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음·식료품 제조업	16.8	17.4	17.8	12.3	12.1	10.9	14.0	9.2	8.2	11.4	10.4	8.9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10.3	8.6	5.7	8.3	6.0	3.5	5.2	2.8	1.6	5.9	2.8	1.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	0.1	0.2	0.9	2.2	0.6	5.3	12.9	8.8	2.5	2.8	3.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5	6.4	7.2	9.4	8.6	7.6	16.6	16.0	14.2	19.9	15.8	15.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9	9.0	9.5	5.0	7.2	8.4	3.6	4.0	4.4	3.6	4.7	5.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9	9.5	8.6	10.4	5.0	5.5	6.8	2.4	4.0	8.6	3.1	5.8
제 1차 금속산업	2.3	1.9	2.3	4.0	2.9	3.1	6.1	5.2	5.0	5.9	3.5	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5	8.3	10.0	6.0	5.2	5.0	3.8	2.7	2.7	3.8	3.2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	10.0	10.9	9.5	9.3	9.3	8.7	6.5	6.0	7.7	6.9	6.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3.9	4.1	4.1	5.6	6.3	6.2	5.5	3.8	4.4	4.4	3.5	4.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8	4.2	3.5	9.6	13.6	16.4	8.0	13.4	20.7	10.3	19.6	2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6.3	7.5	4.6	10.3	14.8	3.4	13.4	14.1	3.7	15.6	12.3
기타	16.4	14.3	12.7	14.4	11.5	8.9	13.0	7.8	5.9	12.3	7.9	6.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각 연도

특히, 최근 10년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액 증가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95년 10.3%에서 2004년 24.4%로 급속히 증가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도 동기간 3.7%에서 12.3%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4.8), 음식료품(10.9), 기타 기계 및 장비(9.3%)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의 4대전략산업(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을 비교하여 볼 때 디스플레이산업과 첨단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대부분 산업이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이 되어있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정보기기산업은 아산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변지역에 중소부품업체들이 집적이 되어 있고, 관련 산업이 많은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아산에 현대자동차, 서산에 동희오토(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관련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홍성에 덴소풍성과 3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③ 충남의 대외교역 구조

충남의 수출은 2005년도에 300억 달러를 넘어서 33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충남은 GRDP 기준으로 전국의 5.4%를 차지하였으나 수출은 전국의 11.5%를 차지하여 충남 수출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주도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18〉 광역시도 GRDP(2000년 기준가격) 및 수출 현황

지역	GRDP(2004년)		수출(2004년)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천$)	비중(%)
충남	**38,138,563**	**5.4**	**29,271,550**	**11.5**
서울	156, 681,380	22.3	29,923,964	11.8
부산	40,388,883	5.7	6,433,917	2.5
대구	22,297,751	3.2	3,155,022	1.2
인천	32,132,214	4.6	10,645,041	4.2
광주	14,869,493	2.1	5,287,582	2.1
대전	16,373,579	2.3	1,837,757	0.7
울산	35,574,769	5.1	37,470,080	14.8
경기	146,755,052	20.9	46,465,694	18.3
강원	18,469,017	2.6	641,502	0.3
충북	23,552,311	3.4	7,545,723	3.0
전북	21,995,674	3.3	4,224,538	1.7
전남	30,543,036	4.7	12,608,643	5.0
경북	51,198,164	6.7	33,951,242	13.4
경남	47,607,918	6.5	24,292,390	9.6
제주	6,228,061	0.9	69,791	0.0
기타	-	-	20,334	0.0
전국	702,805,865	100.0	253,844,672	100.0

자료: 통계청 및 한국무역협회

품목별로는 반도체,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칼라TV가 18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충남 수출의 56%를 차지하여 충남수출을 주도하였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24억 달러로 자동차 산업이 충남 수출의 양대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표 4-19〉 2005년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단위: 억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반도체	110.5	33.0	원유	54.5	30.5
모니터	36.2	10.8	나프타	19.6	11.0
평판디스플레이	24.8	7.4	유연탄	13.0	7.3
칼라TV	16.0	4.8	반도체	12.0	6.7
승용차	15.4	4.6	기타 잡제품	5.9	3.3
기타전자응용기기	13.3	4.0	전산기록매체	3.5	2.0
광학기기부품	11.4	3.4	기타 정밀화학원료	2.9	1.6
합성수지	10.9	3.3	인쇄회로	2.8	1.5
석유화학중간원료	9.4	2.8	펄프	2.4	1.3
자동차부품	8.7	2.6	반도체제조용장비	2.4	1.3
총액	335.2	100.0	총액	178.6	100.0

하지만 충남 수출은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에 의해 78.9%, 지역적으로는 천안, 아산 및 서산지역에 의해 94.3%가 이루어지는 등 부문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표 4-20〉 충남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대기업	88.4	89.7	86.9	89.6	78.9
중소기업	11.6	10.3	13.1	10.4	21.1

④충남의 대미 교역 구조

2004년에는 충남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2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하여 비중이 1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5년에 42.6%가 증가하여 비중이 24.7%를 기록하여 중국이 충남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어 미국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1〉 충남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2004			2005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중국	58.1	50.9	19.8	82.8	42.6	24.7
미국	59.5	33.7	20.3	49.8	-16.3	14.9
일본	35.7	44.7	12.2	44.8	25.5	13.4
홍콩	36.5	77.9	12.5	43.0	17.8	12.8
독일	28.5	70.3	9.7	26.4	-7.3	7.9
총수출	292.7	47.8	100.0	335.2	14.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대미수출은 SITC 1단위의 업종분류상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이 40억 달러로 2005년 대미 수출의 80.7%를 차지하였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이 기계 및 운수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22〉 2005년 충남의 대미 수출입

(단위: 억 달러, %)

업종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식료품 및 산동물	0.16	0.3	0.70	6.0
음료 및 담배	0.03	0.1	0.00	0.0
비식용 원재료	0.27	0.5	1.33	11.3
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82	1.6	0.16	1.4
동식물유지 및 왁스	0.00	0.0	0.01	0.1
화학물 및 관련제품	1.33	2.7	2.58	22.0
재료별제조제품	2.84	5.7	0.90	7.7
기계 및 운수장비	40.22	80.7	4.40	37.5
기타 제조업	14.30	28.7	1.61	13.7
합계	49.81	100.0	11.7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미 FTA와 충남 제조업의 수출입 증대 효과 분석

한·미 FTA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 또는 하락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하여 충남의 대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에 의한 대미 수출 증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격탄력성의 추정치가 필요한데 이를 부분균형접근법인 회귀식을 사용해서 추정하였다. 즉 대미수출액과 달러표시 수출가격지수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ARDL모형)을 사용하여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액의 증가를 추정하였다.

장기적으로 충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5억 달러 증가하여 수출증가 추정액이 2005년 대미 수출액의 2.5%에 불과하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0.67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로 인한 충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액이 미미하게 추정된 것은 대미 수출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게 추정되어 대략 2~9.8% 관세인하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충남에 수출이 1.25억 달러 증가하면 이를 원화로 나타내면 1,200억(1달러를 960원으로 가정)의 수출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하여 고용이 약 120×15.7=1,884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서 수출 10억 당 고용증가 크기를 나타내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인 15.7명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사용했다.)

〈표 4-23〉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1990	1995	2000
소비	48.2	33.5	24.0
투자	27.8	20.3	16.1
수출	46.3	25.8	15.7

자료: 한국은행(2004)

또한 한·미 FTA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가 철폐 또는 하락되면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하여 충남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대미수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해서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수입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1.03억 달러 및 2.1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입가격 상승 시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4-24〉 대미 수출함수의 추정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업	합계
상수	0.0228	-8.7628	0.7517	-16.5820	-12.0390	-9.2605	3.4057	4.0449	0.9885	
$log(y_{t-1})$	0.9343	0.5250	-	-	0.6042	-	-	0.7073	0.9550	
$log(P_t)$	0.3409	-4.0692	-0.5312	-0.4560	-4.3827	-1.3976	-0.1336	0.8680	-0.2264	
$log(P_{t-1})$	-0.3487	-1.1492	0.8337	0.9296	3.1714	2.0330	0.2518	-1.0819	0.1702	
$log(IP_t)$	0.1719	8.0867	2.8137	5.9423	4.3374	4.2401	2.3162	0.7052	-0.0150	
$log(yen/\$_t)$	-	-	-0.7384	-0.0708	-	-	-	-0.3152	-	
$\overline{R^2}$	0.96	0.92	0.91	0.84	0.80	0.99	0.89	0.98	0.98	
2005년 대미수출액 (억달러)	0.16	0.03	0.27	0.82	0.00	1.33	2.84	40.22	14.3	
미국의 관세인하 크기(% p)	9.8	9.8	3.0	3.0	3.0	3.6	3.0	2.5	3.0	
단기탄력성(%)	0.3409	-4.0692	-0.5312	-0.4560	-4.4827	-1.3976	-0.1336	0.8680	-0.2264	
단기 수출액 증가(억 달러)	-0.01	0.01	0.00	0.01	0.00	0.07	0.01	-0.87	0.23	-0.67
장기 탄력성(%)	-0.1187	-10.986	0.3025	0.4736	-3.603	0.6354	0.1182	-0.7307	-1.2488	
장기 수출액 증가(억 달러)	0.00	0.03	-0.00	-0.01	0.00	-0.03	-0.01	0.73	0.54	1.25

주: y_t= 수출액(달러표시)

P_t= 수출 가격지수(달러표시)

IP_t=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

$yen/\$_t$ = 엔/달러 환율

〈표 4-25〉 충남의 대미 수입함수의 추정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광물성 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 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업	합계
상수	0.6777	4.1227	1.5411	2.7123	1.0760	1.9737	1.6936	-1.7653	-2.3251	
$log(y_{t-1})$	0.8782	0.7905	0.8396	0.8069	0.8549	0.6748	0.7754	0.5430	0.6627	
$log(P_t)$	0.5027	1.9007	0.5680	0.7919	-0.1755	0.7835	0.4582	1.7037	0.6718	
$log(P_{t-1})$	-0.3299	-2.1496	-0.3484	-0.5945	0.3611	-0.3031	-0.1855	-0.5285	0.5155	
$log(IP_t)$	0.0458	-0.1440	-0.0615	-0.2499	-0.1141	0.1132	0.0324	0.8144	0.3673	
$\overline{R^2}$	0.87	0.62	0.93	0.84	0.82	0.94	0.79	0.89	0.92	
2005년 대미수입액(억달러)	0.70	0.00	1.33	0.16	0.01	2.58	0.90	4.40	1.61	
한국의 관세인하 크기(% p)	46.2	46.2	6.0	5.8	6.0	6.0	6.0	8.0	6.0	
단기탄력성(%)	0.5027	1.9007	0.5680	0.7919	-0.1755	0.7835	0.4582	1.7037	0.6718	
단기 수입 증가(억 달러)	-0.16	-0.00	-0.05	-0.01	0.00	-0.12	-0.02	-0.60	-0.06	-1.03
장기탄력성(%)	1.4187	-1.1880	1.3690	1.0222	1.2791	1.4772	1.2141	2.5715	3.5200	
장기 수입 증가(억 달러)	-0.46	0.00	-0.11	-0.01	-0.00	-0.23	-0.07	-0.91	-0.34	-2.12

주: y_t= 수입액(달러표시)
P_t= 수입가격지수(달러표시)
IP_t= 한국의 산업생산 지수

(3)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한·미 FTA의 효과

우리경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최근 부진한 가운데 충남도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형태도 주로 그린필드 투자형태로 자동차부품업종에 투자되어 지역경제의 생산 및 고용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4-26〉 충남의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1999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건수	183	47	38	41	30	42	381
금액	1,781,491	257,158	491,062	580,990	701,646	1,200,725	5,013,072

자료: 충남도정백서(2005)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1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7〉 충남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국 가	2003		2004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미 국	91,125	7	83,111	13
일 본	15,447	8	967,371	12
영 국	387,521	3	3,000	1
중 국	186	3	3,000	1
기 타	207,367	9	143,773	15
합 계	701,646	30	1,200,725	42

자료: 충남도정백서(2005)

〈표 4-28〉 충남의 규모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건)

금 액	2003	2004
500만 달러 이상	4	14
100만~500만 달러	5	12
50만~100만 달러	3	1
10만~50만 달러	6	7
10만 달러 미만	12	8
합 계	30	42

자료: 충남도정백서(2005)

한·미 FTA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 유입

국가	대비기간		미국으로부터 FDI의 연평균증가율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칠 레	1990~2003	2004	6.04	10.61
싱가포르	1990~2003	2004	11.84	15.19
호 주	1993~2003	2004	20.76	84.30
캐나다	1990~1993	1994~2004	0.20	19.18
멕시코	1990~1993	1994~2004	15.86	29.22

자료: 이준규(2006)

따라서 한·미 FTA로 충남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주로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향후에도 금융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남지역에는 미국자본을 유치할 서비스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한·미 FTA로 제조업에 대한 미국

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충남지역이 그 대상지역으로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의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전기·전자, 화공, 운송장비 등이 주요 투자대상 업종이었는데, 충남에 이 분야의 대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한·미 FTA 로 인한 충남으로 FDI의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0〉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2004년 누계		2002~2004년(연평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제조업	45,943	100.0	3,415	100.0
전기·전자	15,013	32.8	1,253	36.7
화공	8,329	18.2	736	21.5
운송용장비	4,934	10.7	539	15.8
일반기계	4,370	9.5	274	8.0
식품	3,783	8.2	69	2.0
제지·목재	2,536	5.5	36	1.1
금속	2,304	5.0	254	7.4
비금속광물	2,031	4.4	74	2.2
의약	965	2.1	76	2.2
섬유·의류	873	1.9	26	0.8
기타제조	802	1.7	78	2.0

자료: 산업자원부

결과적으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여지가 있다. 한·미 FTA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기대되는 산업은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생활용품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표 4-31〉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과 중소기업 비중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	
		높 음	낮 음
한·미 FTA의 영향	긍정	섬유, 의복, 가죽제품, 목재제품, 음식료품, 기타(생활용품, 잡제품)	자동차
	보통	화학 · 고무 · 플라스틱제품, 조립금속제품	철강제품, 석유 · 석탄제품, 전자제품
	부정	종이 · 인쇄제품, 기타 광물제품, 기타 금속제품,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자료: 산업연구원

그런데 충남의 제조업에서는 한·미 FTA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등의 비중은 매우 낮고, 오히려 대기업의 비중이 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4.4%), 화합물 및 화학제품(15.5%)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12.3%)등은 비중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해외자본유치도 대기업관련 기업에 집중[10]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2〉 충남에 있어 삼성계열 기업의 위치

	수출(05년)	외자유치 (01~05년)	지방세 (05년)	산업단지면적 (05년)
삼성계열기업(A)	215억 달러	22.5억 달러	771억원	254만평
충남전체(B)	335억 달러	33억 달러	-	2600만평
A/B	0.64	0.68	-	0.10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28.3%), 국내매출 감소(27.3%) 등의 실적 악화와 함께 경쟁 격화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을 우려(16.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중소기업도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수익성 약화, 국내 매출

10) 2001~2005년간 충남의 외자유치 실적 33억 달러의 약 3분의 2를 삼성 계열기업이 달성하였다.

감소, 대기업 수익악화의 중소기업 전가 등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미 FTA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 종합적 판단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로 수출과 수입의 증대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장기적으로 1.25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고용의 증가는 대략 2,000명이다.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분석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충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에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전기·전자, 화공, 운송장비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충남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과 생산의 증가가 대부분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에 집중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삼성 등 대기업 관련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남의 제조업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미 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단순한 관세인하보다는 충남의 대미 수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관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한·미 FTA 에 대한 충남지역의 대책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충남도는 SOC 구축 등의 간접적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6.7%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표 4-33〉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99	2000	2001	2002
사업체 수	99.7	99.7	99.8	99.8
고용인원	81.9	83.9	85.6	86.7
생산액	47.5	47.5	49.2	50.9
부가가치	48.3	50.2	51.9	51.9
수출	34.1	36.9	42.9	42.0

자료: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및「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충남에서도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71%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중이 중요하다.

〈표 4-34〉 2004년 충남 제조업의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명)	부가가치액(억원)
중소기업(A)	3768	111,328	107,335
충남 전체(B)	3820	157,850	237,517
A/B	0.99	0.71	0.45

자료: 통계청, 광공업조사통계조사보고서(2005)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지원필요 분야는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한미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지출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된 대책이다.

〈표 4-35〉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요구 분야

대책 요구 분야	비중(%)
유망사업 집중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화	26.5
한미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참여 지원	21.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 대응력 제고	19.5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등 미국시장 개척	17.1
기타	8.8
중소기업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공급 원활화	5.3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형화	1.5
합 계	100.0

자료: 산업연구원(2006)

대미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남도는 미국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지 유통 네크워크 구성 등 비가격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및 일본에 치중된 중소기업의 대외거래를 미국으로 확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진출과 관련된 경험 전수 및 확산을 위한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포럼 활성화나, 글로벌 모니터링센터의 구축을 통해 중간재 부품 등 미국의 글로벌 구매 수요 관련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성 제고 등의 대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4-36〉 미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효과가 낮은 이유

이 유	비중
대미수출은 관세 등의 가격보다는 품질 등에 좌우되기 때문에	14.6
유통기반 등 미국시장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여	14.2
관세 철폐에 따른 인하 폭이 낮아서	8.3
비관세장벽 등 미국시장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어려워서	3.0
이미 미국의 수입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	2.9
기타(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미미 등)	57.0
합 계	100.0

자료: 산업연구원(2006)

아울러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및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추진과 제도적 지원 장치를 도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 협상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대미 농산물 수입 추이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05년 기준으로 약 22억 달러로서 전체 농수산물 수입의 약 19%를 차지한다. 대미 농산물 수입은 1990년도에 전체의 41%에 달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9%, 2005년에는 19%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전체의 71%(16억 달러)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은 광우병으로 2003년에 비해 65%나 감소하였다.

〈표 4-37〉 대미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0	2003	2004	2005
농림축산물	합계	2,433,717	2,739,639	2,744,756	2,198,549
농산물	소계	1,429,659	1,391,501	2,196,506	1,553,621
	곡류	481,163	312,660	1,091,293	591,223
	두류	294,599	325,205	376,925	237,577
	과일류	116,393	189,337	207,182	193,043
	사료	89,074	131,740	128,680	145,470
	기타	448,429	432,559	392,426	386,309
축산물	소계	808,898	1,164,863	337,606	412,281
	포유육류	550,299	904,523	146,760	144,929
	기타축산물	87,121	88,745	93,494	103,976
	낙농품	34,094	38,764	42,162	58,778
	가름육류	48,184	36,048	4,867	33,660
	기타	89,200	96,783	50,323	70,939
임산물	소계	195,160	183,274	210,645	232,647
	원목	77,208	94,499	109,619	119,798
	견과류	18,462	32,099	41,462	54,187
	제재목	43,695	25,414	20,238	20,973
	기타	55,795	31,262	39,326	37,68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주요 품목별로는 옥수수(313백만 달러), 밀(226백만 달러), 대두(235백만 억 달러), 돼지고기(141백만 달러), 오렌지(126백만 달러), 사료용 근채류(112백만 달러) 등의 순이며, 최근에 돼지고기, 오렌지, 사료용 근채류의 수입이 증가추세이며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의 수입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여타 국으로 수입이 전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한두봉, 2006, p.9).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관세를 살펴보면 식용 콩, 참깨, 고구마, 감자 등 식용곡물은 관세율이 높고, 채소, 축산물, 과일 등은 비교적 관세율이 낮다(45% 이하). 그러나 농축산물 전체의 관세율은 한국이 46.2%인 반면에 미국은 9.8%로 관세 철폐가 초래하는 영향은 한국이 훨씬 크다.

〈표 4-38〉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양허관세 비교

(단위 : %)

품목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	2004년 양허관세율
콩	974	487
미곡	497	관세화 유예
인삼	372	222.8
고추	270~367 (318.5)	270
낙농품	260	176
마늘	209	360
사과	185~227 (206)	45
쇠고기	122~273 (197.5)	40
복숭아	145~188 (166.5)	45
천연꿀	136	243
닭고기	63~120 (91.5)	18
고구마	80	385
딸기	69	45
배추	59~70 (64.5)	27
감자	55	304
감귤	47	144
포도	17~55 (36)	45
돼지고기	17~30 (23.5)	22.5

자료: 최세균(2006)

2) 농산물 부문의 주요 이슈와 협상 경과

(1) 주요 이슈

①민감품목의 확대

미국은 쌀을 포함하여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국은 쌀은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200여개의 민감품목도 예외적 취급품목 대상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농산물 1,799개 품목 중 총 19% 해당하는 342개 품목을 관세화 유예 품목으로 하였으며,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하였지만

멕시코의 농산물 74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하였다.

한국은 민감품목에서 제외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최대한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②SSG(특별긴급관세)의 도입 여부

한국은 SSG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 강국인 호주·칠레·중남미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SSG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SPS(위생 및 검역조치)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사실상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위생 및 검역조치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SPS 기준의 자의적 적용을 규제할 것과 쇠고기를 포함한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의 현재 식물검역상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품목들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2차 협상까지의 협상 결과

현재까지 농산물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타결된 것은 사실상 없으며 추후의 협상과정에서 추가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당초 제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양허안을 교환 못하였다. 다만 관세철폐기간에 대하여 5가지의 양허유형(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에 합의하였으나,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9월 초에 열린 3차 협상 직전에 양측은 양허안을 교환하였으나 우리 정부 측은 최대한'보수적'으로 쌀을 포함하여 대부분을 민감품목에 넣어 284개의 예외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단 한 개의 예외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위생·검역(SPS) 부문도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입장차이가 큰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였다.

3)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1) 그간의 파급영향 연구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협상결과인 협정문과 양허조건에 좌우되나 협정이 진행 중이고 아직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전에 협상결과에 따른 파급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파급영향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크게 일반균형모델에 의한 분석방법과 부분균형모델에 의한 분석 방법 두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

①CGE(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방법으로 추정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비스업 개방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농업부문에도 반영된다고 상정하고 쌀을 제외한 농산물을 5개 대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9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를 50%로 인하하고 나머지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하여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을 때 FTA 발표 후 농업생산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②부분균형 방법으로 추정한 연구

최세균(2006)은 관세 철폐로 인한 품목별 영향을 부분균형 모델로 계측한 결과 예상피해액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피해액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1조2천억~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③수입 증대 우려 품목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미국의 비교우위가 큰 부문인 식용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 등 축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인 오렌지, 포도 등 과실류와 과실조제품, 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 유제품 및 이들 가공·조제품, 양파, 인삼, 꿀 등에서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은 현재 식물검역 상 수입금지 품목이나

향후 협상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면 이들 품목의 관세가 45%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다가 미국산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의 30%에 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피해액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쌀, 쇠고기, 대두(콩),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 등 7개 품목이다(최세균, 2006).

〈표 4-39〉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

시나리오	시장개방 내용	농업생산액 감소액(억원)
KIEP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 80% 감축	9,000
KREI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은 관세 50% 감축, 나머지 관세철폐	22,830
USITC	전 품목 관세 철폐	88,000
최세균 (2006)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 부분균형모형 사용	12,000~20,000

자료: 한두봉(2006) 및 최세균(2006)

(2) 충남의 산업구조와 농업생산구조

①충남의 산업구조와 농림어업부문의 비중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2004년)로 전국의 평균인 3.6%보다 약 2.5배나 높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도 2004년에 충남의 총취업자의 24.1%를 차지하여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의 8.1%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발전은 광공업이 주도하더라도 농림어업 의존 인구가 약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이 충남의 경제와 농업에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0〉 충남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와 부문별 성장률

(단위: %)

	2000(충남)	2004(충남)	2004(전국)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2000~2003,충남)
농 림 어 업	12.2	8.9	3.6	-0.1
광 공 업	39.1	41.9	28.7	10.2
제조업	38.6	41.6	28.4	10.3
전기, 가스, 수도	5.0	4.7	2.4	15.5
건설업	9.5	10.9	9.4	8.6
서비스업 및 기타	34.2	33.6	56.0	5.3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②충남의 농업생산구조

지역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충남의 농수산업 비중은 13.3%에 달하며(2004년), 생산면적 기준으로는 13.7%에 이른다. 작목별로 보면 미곡, 채소, 시설작물 등의 순으로 생산면적이 크며, 전국 대비로는 미곡, 특용작물, 시설작물의 순으로 경작면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41〉 전국 및 충남의 농수산부문 GRDP(2004년 경상가격)

	전국(백만원)	충남(백만원)	충남/전국(%)
농수산업	25,087,845	3,331,644	13.3
작물재배업	16,478,926	2,247,643	13.6
축산업	3,514,197	529,753	15.1
농업서비스	937,138	126,653	13.5
임업	1,821,148	265,241	14.6
어업	2,336,436	162,354	6.9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표 4-42〉 작물별 재배면적(2004년 기준)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점유비중
		면적(천ha)	%	면적(천ha)	%	%
계		3,172.08	100.00	435.44	100.00	13.73
식량 작물	소계	1,230.94	38.81	181.42	41.66	14.74
	미곡	1,001.16	31.56	168.34	38.66	16.81
	맥류	63.24	1.99	0.41	0.09	0.64
	잡곡	27.05	0.85	0.89	0.20	3.29
	두류	99.74	3.14	8.21	1.89	8.23
	서류	39.76	1.25	3.58	0.82	9.00
채 소		255.35	8.05	23.13	5.31	9.06
특용작물		63.18	1.99	8.02	1.84	12.69
과 수		152.65	4.81	10.59	2.43	6.93
뽕 밭		0.57	0.02	0.05	0.01	8.27
기타 수원지		29.62	0.93	3.74	0.86	12.64
시설작물		104.40	3.29	13.95	3.20	13.36
기타작물		104.43	3.29	13.12	3.01	12.56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축산의 경우 한육우에 약 2만 1천 농가, 닭이 1만 2천 농가, 돼지에 2천 농가가 종사하며, 전국 대비로는 돼지, 젖소의 비중이 높다.

〈표 4-43〉 축산가구 및 가축 수(2004) 전국 대비 충남 비중

(단위: 호, 마리, %)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비중(%)	
	가구 수	가축 수	가구 수	가축 수	가구 수	가축 수
한·육우	188,948	1,665,704	21,631	214,748	11.45	12.89
젖소	9,612	497,261	1,524	79,990	15.86	16.09
돼지	13,268	8,908,456	2,095	1,587,561	15.79	17.82
닭	131,288	106,736,000	12,540	15,524,573	9.55	14.54
사슴	10,874	138,302	2,219	22,505	20.41	16.27

자료: 충남도, 통계연보, 2005.

③충남의 농축산물 수출 현황

2005년 충남 농산물(축산 제외)의 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로서 품목별로 보면 인삼이 6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과일로서 1천 7백만 달러였다. 과일 중에는 사과가 동남아로 일부 수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배이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4천 6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이 2천 4백만 달러, 미국이 2천 2백만 달러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품은 인삼이 1천 2백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배가 약 7백만 달러를 차지하여 이 두 품목은 대미 수출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충남 농업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이 두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의 대미 수출은 불과 2천만달러(한화 약 190억 원)에 그쳐 충남 농업부문(작물재배업) 총생산액 3조2천억(2004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한·미 FTA 체결이 충남 농업에 미칠 영향은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의 수출실적은 거의 미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도 충남의 수출실적은 삼계닭 1만 4천3백 달러에 그쳐 농산물의 수출 규모와 비교할 때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축산물은 수출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북한(금강산 관광)이나 이라크(파병 군납용)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거의 없다.

〈표 4-44〉 충남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불)

	2004년	2005년도 종류별·품목목별 수출실적					
		계	일본	미국	중국	동남 아시아	기타 (유럽 등)
농산물	97,035	102,901	23,993	22,407	9,606	45,846	1,050
채소	2,600	2,720	1,851	167	0	697	6
김치	5,208	4,345	3,645	439	0	70	191
과일	17,949	20,670	34	7,191	242	13,128	75
화훼	7,820	7,724	1,830	2,103	3,722	69	0
인삼	63,459	67,443	16,633	12,508	5,642	31,882	778

(3)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추산

①추계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CGE 추산 결과를 인용하여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추계하면, 전국적으로 농업생산감소액이 총 2조 2천8백30억 원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 충남의 농업생산비중을 감안할 때 충남 농업의 생산감소액은 약 3,133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4-45〉 충남의 농업생산감소액

	전국 농업생산감소액	전국 농업생산액 중 충남의 비중*	충남의 농업생산감소액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결과	22,830억 원	13.7%	3,133억 원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은 관세 50% 감축, 나머지 관세철폐

* 주 : (충남 작물재배업 총산출 + 충남 축산업)/(전국 작물재배업 총산출 + 전국 축산업 총산출)%

그러나 이 방법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을 9개의 품목군별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만약 쌀이 협상에서 포함된다면 예견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세균(2006)의 부분균형 모델을 사용한 품목별 피해액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농업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최세균(2006)의 연구도 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쌀에 양허관세율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나누어 예상 피해액을 추산해 본다. 품목별 영향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산 가격의 하락이 수입산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산 수요 대체 → 국내산 가격하락 → 국내

생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수입산 가격하락의 국산 수요 교차탄성치를 구하여 생산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다.

충남의 농산물 품목별 예상 생산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산 가격하락의 충남 농산물 수요 교차탄성치를 구해야 하나,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충남만 별도로 계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상의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최세균(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품목별 피해액을 충남의 각 품목별 생산 비중으로 곱하여 충남의 품목별 예상 피해액을 추산하기로 한다.

참고로 최세균(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최대 피해액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쇠고기, 대두(콩),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 등 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피해액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피해액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1조2천억~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국내 농산물 생산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 중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은 배추,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등 6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감소 비율로 볼 때 미국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약 8배나 높은 대두(식용콩)는 국내산 대두의 값이 미국산 대두의 값에 수렴하는 경우 대두의 생산이 약 85%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 대미 수입이 동식물방역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이 허용되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산 갈라, 후지 계통의 사과는 국내산 품종과 대체가능성이 높아 생산 감소비율은 약 25%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으로 포도도 국내산 대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 17%의 생산 감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배나 복숭아의 경우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감소율은 약 12%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쇠고기는 가격차이도 크고(약 2.6배) 관세율도 높기 때문에(40%)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며(약 12% 생산 감축), 닭고기는 현행 관세율수준이 낮으나(20%)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68%, 2000~02년 평균) 역시 약 12%의 생산 감축이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22.5~25%) 미국산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6.8%정도의 생산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46〉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 (전국) (2001~2003년 평균)

순위	품목	'01 ~'03 평균농업생산액 (억원)	감소비율(%)	생산감소액 (억원)
1	미곡	97,047	-	-
2	쇠고기	20,998	12.5	3,600
3	대두	2,749	84.8	2,713
4	돼지고기	27,639	6.8	2,300
5	사과	4,970	24.9	1,264
6	닭고기	7,446	12.8	1,200
7	포도	4,797	17.3	1,135
8	감귤	3,972	19.0	793
9	낙농품	5,228	5.0	602
10	고추	15,001	5.4	516
11	배	3,544	12.6	434
12	인삼	5,023	5.6	309
13	감자	5,550	4.5	250
14	마늘	1,832	4.0	225
15	복숭아	1,721	12.0	221
16	양파	2,748	7.1	184
17	토마토	2,671	3.0	172
18	딸기	6,189	2.5	160
19	천연꿀	1,333	-	-
20	연초	2,946	-	-

자료: 최세균(2006)

②충남의 품목별 피해액

먼저 품목별 생산액 순으로 본 충남의 주요 농축산 생산 품목은 다음 표와 같은데, 미곡이 전체 농축산물 총 생산액 중에 3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돼지, 우유, 수박, 딸기, 닭, 한우, 인산, 토마토 등의 순으로 충남의 총 농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쌀을 제외하고는 이들 품목의 비중은 가장 큰 경우(돼지)라도 7%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쌀이 포함되는가 안되는가 여부가 충남 농업에 미치는 피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들 주요 30개 품목이 2004년 충남의 농산물 총 생산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이다.

〈표 4-47〉 충남의 품목별 생산액 순위(2004)

순위	품목	생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율(%)
1	미곡	17,922	37.2	37.2
2	돼지*	3,154	6.5	43.8
3	시유	2,487	5.2	48.9
4	수박	2,002	4.2	53.1
5	딸기	1,610	3.3	56.4
6	닭*	1,411	2.9	59.4
7	한우*	1,262	2.6	62.0
8	인삼	1,254	2.6	64.6
9	토마토	922	1.9	66.5
10	고추(건고추)	916	1.9	68.4
11	포도	911	1.9	70.3
12	배	870	1.8	72.1
13	배추	671	1.4	73.5
14	오이	558	1.2	74.7
15	마늘	508	1.1	75.7
16	사과	474	1.0	76.7
17	파	395	0.8	77.5
18	콩	346	0.7	78.2
19	무	340	0.7	78.9
20	호박	225	0.5	79.4
21	고구마	205	0.4	79.8
22	참깨	144	0.3	80.1
23	복숭아	130	0.3	80.4
24	단감	109	0.2	80.6
25	양파	33	0.1	80.7
26	상추	31	0.1	80.8
27	참외	21	0.0	80.8
28	감자	18	0.0	80.8
29	느타리버섯	6	0.0	80.9
30	감귤	0	0.0	80.9
충남 농산물 총생산액**		48,150	100.0	

주: * 축산(한우, 돼지, 닭) 생산량은 도축마리수를 기준으로 계산

** 재배업 및 축산업 생산총액(농업서비스, 임업, 수산업 제외)

자료: 농림부, 「농업통계연보」, 2005 및 충남도, 「통계연보」, 2005

상기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상위 20대 피해 품목과 생산감소액을 추산해 본 결과, 쌀에 양허관세율 50%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연간 피해액은 9,901억 원에 이르며(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만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예상 피해액은 약 1,425억 원으로 추정된다(시나리오 2).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역시 미곡으로 연간 약 8천 5백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다음은 식용 콩으로 연간 2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며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도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8〉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충남의 농산물 생산 감소액

(단위: 억원,%)

순위	품목	연간 생산액(2004년)	생산감소액	감소비율(%)
1	미곡	17,922	8,476	47.3
2	콩	346	293	84.8
3	돼지	3,154	197	6.2
4	닭	1,411	180	12.8
5	한우	1,262	158	12.5
6	포도	762	132	17.3
7	사과	510	127	24.9
8	배	769	97	12.6
9	인삼	1,254	70	5.6
10	고추	916	50	5.5
11	딸기	1,605	40	2.5
12	토마토	908	27	3.0
13	마늘	508	20	3.9
14	복숭아	125	15	12.0
15	팥	9	7	77.8
16	녹두	5	4	80.0
17	양파	33	2	6.1
18	땅콩	25	3	12.0
19	메밀	1	1	100.0
20	감자	13	2	15.4
총 생산 감소액 1(미곡 포함)			9,901	
총 생산 감소액 2(미곡 제외)			1,425	

* 생산액은 2004년 기준, 미곡의 생산 감소율은 한두봉 교수(2006)가 추계한 자료에 기초

③시군별 피해액

시군별로 피해액 규모를 보면, 쌀을 포함할 경우 당진이 1천 3백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서산 1천 1백억 원, 예산 780억 원, 아산 750억 원 등의 순으로 피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을 포함할 경우 당진, 서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논농사 경작면적이 충남 시군에서 가장 넓고, 미곡의 지역 내 농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9% 및 7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4-49〉 충남의 시군별 농산물 생산 감소액

(단위: 억원)

순위	시군	쌀 포함 시	순위	시군	쌀 제외 시
1	당진군	1,301.5	1	천안시	183.9
2	서산시	1,114.0	2	예산군	156.1
3	예산군	783.0	3	홍성군	122.6
4	아산시	754.2	4	아산시	121.7
5	연기군	730.1	5	공주시	115.1
6	부여군	710.4	6	논산시	113.9
7	서천군	630.7	7	당진군	114.4
8	홍성군	622.2	8	부여군	83.2
9	천안시	607.4	9	서산시	79.7
10	공주시	605.7	10	보령시	68.9
11	보령시	593.8	11	연기군	64.1
12	태안군	541.5	12	금산군	60.2
13	청양군	370.6	13	청양군	57.6
14	금산군	294.7	14	태안군	56.2
15	논산시	242.4	15	서천군	28.5
	전 체	9,902.1		전 체	1,426.0

한편 쌀을 제외할 경우 천안시가 가장 피해액이 크고 다음이 예산, 홍성, 아산 순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큰 것은 포도와 배 등 과수(천안이나 아산), 그리고 축산(예산, 홍성 등)과 같이 한·미 FTA로 농축산물 관세

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전통적인 충남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진 논산, 공주, 부여, 금산 등에서 피해액이 천안, 예산, 홍성 등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농축산 생산규모나 경작면적이 북부지역에 비해 작고, 주요 피해 예상품목인 축산 및 과수의 생산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논산, 공주, 부여, 금산 등의 지역에서 피해가 결코 적다는 것은 아니다. 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도 지역 농업총생산의 약 4~5% 규모에 해당하는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0〉 쌀 제외 시 시군별 생산감소 비중과 주요 피해 품목

	총생산액*	생산 감소액	생산감소 비중(%)	비 고
천안시	2293.1	183.9	8.0	포도(78억), 배(39억)
예산군	2443.0	156.1	6.4	돼지(16억), 사과(68억), 한육우(21억)
홍성군	2547.3	122.6	4.8	돼지(45억), 한육우(25억)
아산시	2301.2	121.7	5.3	포도(24억),닭(20억),배(20억)
공주시	2076.6	115.1	5.5	콩(42억),한육우(19억),닭(13억)
논산시	2151.9	114.4	5.3	딸기(23억),돼지(19억),인삼(13억)
당진군	3564.4	113.9	3.2	돼지(25억),닭(20억),콩(19억)
부여군	2429.2	83.2	3.4	콩(22억),닭(16억),토마토(11억)
서산시	2767.6	79.7	2.9	콩(32억),한육우(14억)
보령시	1770.4	68.9	3.9	돼지(18억),닭(18억)
연기군	1968.5	64.1	3.3	콩(15억),닭(10억)
금산군	1120.4	60.2	5.4	인삼(22억),콩(14억)
청양군	1095.8	57.6	5.3	콩(24억),닭(10억),한육우(9억)
태안군	1496.0	56.2	3.8	콩(29억),마늘(8억)
서천군	1511.4	28.5	1.9	닭(7억),콩(6억)

* 주: 시군별 농축산물 총 생산액을 추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주요 30개 농축산물 품목의 시군별 생산액(2004년)을 합계하여 계산하였다. 충남 전체의 경우 주요 30개 품목의 생산 합계는 총 농축산물 생산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④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종합

충남 농축산부분의 지역내총생산(부가가치)은 쌀을 포함할 경우 20.5%가 감소할 것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11] 만약 한·미 FTA 협상에서 미곡이 포함될 경우 충남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곡을 협상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피해액 규모가 큰 콩,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을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충남 전체 농축산 생산 비중에서 크지 않더라도 지역집중도가 높아 해당지역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삼(금산), 딸기(공주) 등도 협상과정에 민감품목으로 반영토록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삼은 전국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피해대상 우선순위가 12위에 해당하나, 충남의 경우 9위의 피해품목이며 특정지역(금산 등)의 농가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민감품목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곡을 제외할 경우 농축산부문에서 차지하는 예상피해액의 비중은 3.0%로 작기 때문에 만약 상위 피해 품목 5~10개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실제 한·미 FTA 협상이 미치는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은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전국의 경우도 2004년 총 농축산부문 생산액은 약 35조원으로, 이 중에서 약 2조원의 생산피해(20대 품목합계 혹은 KREI 추계 등)가 예상된다면 감소비중은 약 5.7%에 불과하여 마찬가지 논리가 가능하며, 그동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 등에서 한·미 FTA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우려가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해 온 근거가 되어 왔다.

〈표 4-51〉 시나리오별 충남 농축산부문의 지역내 총생산(부가가치) 감소 비율

	충남 농축산부문 지역내 총생산(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 1 (쌀 포함)	시나리오 2 (쌀 제외)	비중 ①	비중②
2004년 기준(억원)	21,849.8	5,711.1	822.0	20.5	3.0

주 1: 2004년 재배업 및 축산업의 부가가치율 57.7%(경상가격)을 감안하여 각 시나리오별 생산감소액을 부가가치액으로 환산

주 2: 비중①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충남 농축산부문의 지역내총생산 감소비율, 비중 ②는 시나리오 2의 감소비율

11) 한편 농축산 부문이 충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충남 전체 지역내 총생산에는 약 0.2%(시나리오 2)에서 1.3%(시나리오 1)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산업에서 농림수산부문의 비중은 7.7%이나 임업, 수산업을 제외한 농축산 부문만의 비중은 6.4%이다(2004년 기준).

그러나 영향 추정의 결과를 해석할 경우 추정방식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상 생산감소액을 일반균형 혹은 부문균형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공급곡선이 생산 중단점(평균가변비용 최소점) 이하에서도 계속 생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 해당품목의 국내생산은 제로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감소는 추정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상 피해액의 추정 결과 예상보다 한·미 FTA가 미치는 농축산부문에 대한 영향이 작고, 쌀을 제외한 몇 가지 주요 민감 품목만 성공적으로 협상에서 방어한다면 한·미 FTA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 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이다.

이명헌(2006)은 이러한 피해 추정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소득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품목별 충격의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미곡의 경우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농가의 73%가 농가소득의 5%이상 수입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고추의 경우는 농가의 약 17%가, 대동물은 농가의 약 11%가 농가소득의 5%이상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마늘, 귤, 포도, 감자, 보리, 사과, 배, 담배, 콩 등의 경우 농가의 약 2~5%가 소득의 5%이상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쌀을 제외하더라도 고추, 대동물, 마늘, 귤, 포도, 감자 등 주요 민감 품목이 일시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 소득의 5%이상의 감소를 경험하는 농가 비중은 전체 농가의 최소 20~3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 가에 따라 충남 농업이 받는 피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쌀을 포함하여 주요 민간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유예기간을 둔다면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쌀을 포함하여 미국의 핵심 관심 품목인 농산물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며,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고 2004년 한미 쌀 협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가로 일정량의 수입쿼터를 할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농업의 채산성이 낮아 매년 농업인구의 급감과 농가 부채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은 충남 농업의 쇠퇴를 더욱 급속히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3.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1) 서비스업 주요 협상 내용

(1) 서비스 일반

서비스 무역은 국경 간 거래 및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농산물과 상품의 무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넘는 상품의 교역,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른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인 국경 간 공급 뿐 아니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다양한 공급형태가 있는데 한·미 FTA의 경우 국경 간 거래와 FDI(해외직접투자)로 들어오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시장접근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되는 분야는 서비스/국경 간 공급, 금융서비스, 통신, 투자 chapter가 된다. 투자 chapter의 경우 곧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과 직결되므로 주로 상업적 주재 관련 서비스 공급을, 서비스/국경 간 공급 chapter에서는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다룬다. 서비스/국경 간 공급 chapter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규정의 적용 대상 서비스 및 예외,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일반 의무, 양적 제한 및 유보, 전문직자격의 상호인정 등에 관해 규정한다. 사업자의 일시적 입국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서비스업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우루과이 라운드 WTO 양허표 상) 미국은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개방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보다는 우리 측이 더욱 강한 개방 압력에 당면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52> 서비스 공급형태별 자유화도

	모드1	모드2	모드3	모드4
한국	0.336	1.00	0.442	0.295
미국	0.475	1.00	0.578	0.357
EU	0.270	1.00	0.513	0.364
일본	0.361	1.00	0.555	0.338

주 : 시장접근과 관련 모드3, 모드 4는 서비스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드 1은 통신 및 운송, 모드2는 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완전한 자유화=1, 부분적 자유화=0.5, 완전한 비자유화=0.

자료 : 이준규, 이홍식(2005)

〈표 4-53〉 모드 3의 업종별 자유화

	유형	한국	미국
서비스업 전체	154	0.442	0.578
사업	46	0.652	0.685
통신	26	0.583	0.792
건설	5	0.500	1.000
유통	5	0.600	1.000
교육	5	0.000	0.300
환경	4	0.500	1.000
금융	17	0.353	0.500
보건 및 사회	4	0.000	0.250
관광	4	0.750	0.750
엔터테인먼트	5	0.000	1.000
운송	35	0.214	0.157

주: 완전 자유화=1, 부분적 자유화=0.5, 완전 비자유화=0.

자료: 이준규, 이홍식(2005)

한·미 FTA에서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즉 개방에서 제외할 업종을 제시하고 이외 분야는 모두 개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교역관련 일반 의무사항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국경 간 서비스 공급관련 현지주재 의무가 되는데 어떤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이 의무사

항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들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부속서I 또는 부속서II에 기재하고 부속서 I, II에 기재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본다. 부속서 I는 현재유보로서 유보조치를 나열한 목록이며 부속서 II는 미래유보로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다. 그러나 상기 4가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정책목적의 국내규제는 허용된다. 다만 무역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 등은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전력, 가스, 수도, 의료, 공교육, 방송 등 공공분야는 제외하고, 한·싱가포르 FTA 때 적용된 유보대상은 80개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안경유통업, 선원교육서비스, 택배업 등을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96개에 달하는 유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측 1차 유보안은 현재 유보가 52개로서 건축설계, 회계, 세무, 통신(지분), 해운 등을 포함하고 있고 미래 유보는 44개로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취약계층 보호, 방송, 스크린쿼터, 초중등교육, 보건의료 등이다. 미 측은 미·호주, 미·싱가폴 등 기존 FTA에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유보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유보는 12개로서 원자력산업, 주정부 조치의 초괄 유보 등이고 미래유보는 7개로서 공공서비스, 소수민족 우대, 해운, 방송 등이다.

그러나 우리 측의 유보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미국은 전 서비스부문에 걸쳐 한국에 대해 고강도 자유화 요구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추가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서비스산업 추가 개방과 관련 오직 방송 및 시청각분야만 허용한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통신, 외국인 경영자 국적 제한 철폐, 특송, 부동산,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허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은행, 보험, 통신,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금융컨설팅, 도소매 유통, 최고경영자 국적 제한, 특송, 부동산, 법률 등이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업종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표 4-54〉 미국형 FTA에서 추가적 서비스개방

	칠레	호주	바레인	CAFTA	모로코	싱가폴
은행			◆		◆	◆
보험	◆		◆	◆	◆	
통신	◆		◆	◆	◆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	◆				
금융컨설팅			◆			
도소매 유통				◆		
최고경영자 국적제한				◆		◆
특송						◆
부동산						◆
법률 시장 추가개방						◆

자료 : World Bank, 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100쪽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법률, 회계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방시기가 문제인데 미국 측은 빠른 시기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시장 개방의 국내 근거법이 될 외국법자문사법의 조기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조기 시행 검토와 관련, "시장을 전혀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 조금 열어 놓고 협상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미 측은 한국 공중파 방송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케이블TV와 위성TV에는 관심이 있으며 특히 방송 제작프로그램 비율과 외국자본의 출자, 출연 비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국내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 방송업도 외국자본은 33%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업과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 정부나 단체,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부터 재산상 출자나 출연도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제한을 규제라고 판단,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

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으나 '공교육 시장의 개방에는 관심 없지만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 테스트 시장, 온라인 교육시장의 개방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하여 모든 교육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측은 협정문 초안에 특급배달서비스(EDS)와 외국 법률자문서비스(FLC)가 직접 의무사항으로 규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용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DS의 경우 우체국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및 교차보조 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FLC의 경우 합작, 고용 등 전면적 개방을 요구(단, 유보는 허용)하고 있다. 우리 측은 서비스 분야별 개방문제는 본문이 아닌 유보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협정문에 직접 반영하는 경우 그 내용대로 바로 자유화 의무가 발생하고 추후 타국과의 FTA 추진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일시입국 분야에서 전문직 상호 인정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우리나라가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연방정부 협상권, 추진권한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2) 금융서비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상업적 주재를 이미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협상은 국경 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의 DDA 금융서비스 양허안에서도 'ⅰ)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ⅱ)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 도입 권한 보유'라는 조건하에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경 간 거래에서는 개방하지 않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허용한 부문만 개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서비스 허가 및 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어 왔으나 국경 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 유지, 건별 허가제 허용 등 개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국경 간 거래 개방은 기존에 이미 개방되어 있는 제한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방할 상품만 부속서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양국 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

고 소매금융이 제외되어 있으며 전문가 및 법인들 간의 거래와 같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양허를 하기로 양국 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상업적 주재로만 가능하게 하고 국내금융당국이 허가권이 보장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의 신종 금융서비스가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 어렵도록 또는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아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경 간 거래에 있어 3차 협상 시 미국이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에서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제한된 범위에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한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의 경우 펀드의 상대국내 직접 설립, 모집,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미 설립된 펀드에 한해 상대국 자산운용사 위탁허용하기로 하였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주식을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경영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해외자산 운용에 있어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국경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상품(수출입 적차 보험, 재보험, 우주선발사보험)만 중개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FTA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우체국 보험과 같이 만일 공공영역의 금융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업 개방의 영향

(1) 서비스업의 중요성 및 교역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55.5%, 고용비중은 64.4%로 OECD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GDP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2년 미국 75.6%, 영국 73.2%, 일본 69.6%, 독일은 70.1%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수지도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130억 달러로서 전 세계 37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이윤석, 2006)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서비스수지를 보면, 정부서비스와 기타서비스를 제외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업서비스 등 거의 전 부문에서 대비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폭은 2003년 기준 33억 달러에 달하며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특허권 등 사용료에서 전체 적자수준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4-55〉 한미서비스무역 (2003년)

(단위 : 백만달러)

	총서비스무역액			대미서비스무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전체	32,957	40,381	-7,424	9,333(28.3)	12,665(31.4)	-3,332(44.9)
운수	17,180	13,613	3,567	4,065(23.7)	4,112(30.2)	-47(-1.3)
여행	5,358	10,103	-4,745	728(13.6)	2,170(21.5)	-1,442(30.4)
통신	341	693	-352	130(38.1)	210(30.3)	-80(22.7)
보험	34	390	-356	-24(-70.6)	39(10.0)	-63(17.7)
특허권 등 사용료	1,311	3,570	-2,259	428(32.6)	1,951(54.6)	-1,523(67.4)
사업서비스	6,687	11,049	-4,362	2,708(40.5)	3,788(34.3)	-1,080(24.8)
정부서비스	1,203	453	751	1,033(85.9)	161(35.5)	872(116.1
기타서비스	842	510	332	265(31.5)	234(45.9)	31(9.3)

* 비중은 총서비스 무역 중 대미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말함.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기가스 수도와 건설 분야를 빼고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개방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56〉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과 비교한 미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PPP적용)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기타 서비스
2001	248.0	44.6	113.3	410.6	186.9	173.6	235.7	170.8
2002	241.9	38.4	120.2	409.2	184.2	139.4	248.4	173.5
2003	242.0	60.6	113.1	404.2	185	151.2	257.6	174.8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05), 생산성 국제 비교

(2) 한·미 FTA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경쟁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미 FTA가 서비스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측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IT,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과 금융, 통신 및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산업구조로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분야는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여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세계화는 제조업과 콜센터나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서비스의 역외조달뿐 아니라 회계, 컨설팅, 법률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역외조달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경쟁은 인터넷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하여 고학력 전문 인력이 풍부한 인도와 중국 등으로 지식기반서비스의 역외조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서비스의 역외조달 흐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경태, 2006).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개방은 경쟁촉진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은 이

미 개방이 되어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새로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업체들의 진출이 있다고 해도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하여 역으로 국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FTA에서 미 측의 관심분야는 금융, 통신, 택배서비스, 법률 등 전문가들이 주로 운영하는 분야로 일반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분야는 아니다. 추가적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 통신, 법률, 컨설팅,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에서는 반대로 우리 측이 협상을 통해 오히려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등을 강하게 요구,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진출 증대에 적극 노력 중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국내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전문직 분야에서의 상호인정 도입 시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시스템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3) 비관적인 전망-공공성 훼손, 국내 산업 기반 잠식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측은 한·미 FTA로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 초이래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5년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6.7%이나, 고용 비중은 65.2%에 이른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크다. 그러나 고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그 자체로는 대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서비스산업 종사자 10,556,329명 중 통신업은 1.2%(131,594명), 금융·보험업은 5.5%(582,815명), 사업서비스업은 9.4%(988,405명)의 고용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2005년 말 발간한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고용 창출 역시 국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일부 국내 변호사에게 국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는 외국로펌으로의 전직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순수한 고

용 창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12)]

한·미 FTA가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시장의 경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에서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 비용의 인하가 기대될 수 있지만 "기업의 국제적 인수·합병(M&A) 등과 같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국제법무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선임에 있어 비용보다는 평판이나 능력과 같은 요소를 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로펌의 진출이라는 공급 증가로 인한 법률 비용 인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계층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임시직·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중 상용종사자는 전체의 54.37%에 불과한데 반해,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가 35.91%에 이르러 고용 형태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여성이 전체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46.27%를 차지하여, 제조업의 29.37%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개방화 과정에서 몰락할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마트의 진입이 국내 대형할인점의 성공과 동네 슈퍼・재래시장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금융당국의 감독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규제완화는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허가 및 감독 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이나, 미국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금융서비스는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12)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1998년 법률시장 전면개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급 변호사 대신에 자질 있는 신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면서 이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법조인의 고용 기회 창출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 변호사중 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일부 국내 변호사에 국한되는 현상일 뿐 일반적인 취업 기회 증대로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다. 따라서 한·미간에 금융서비스 허가 및 감독 체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를 개방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적 지위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주재(외국인 직접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창출, 선진금융기법 이전 등의 부수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는 국내 감독기구의 권한이 미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은 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건강보험 급여 강제지정제도 폐지 등의 직접적 경로보다는,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공급 확대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따라서 삼성생명 등 민간 생명보험사들은 의료보험시장의 확대를 그 돌파구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는, 그동안 실손보장형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공급에 최대장애물이었던'개인 질병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규제를 허물어뜨리려는 국내 보험사들의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실질적 허용은 건강의료보험체계의 커버리지 확대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예는, 경제사회질서를 전반을 포괄하는 한·미 FTA의 영향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충남지역 서비스산업 구조 및 한·미 FTA체결의 영향

(1) 충남지역의 서비스업 현황

1986년~2004년 간 1인당 GRDP(실질기준)의 경우 충남은 90년대 전까지는 전국성장률보다 낮은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92년 이후부터는 95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전국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제조업의 성장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에 비해 어떤 해에는 높았다가 어떤 해에는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대신 2004년 들어 서비스업 성장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남의 경우 제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여 왔다.

〈그림 4-4 〉 전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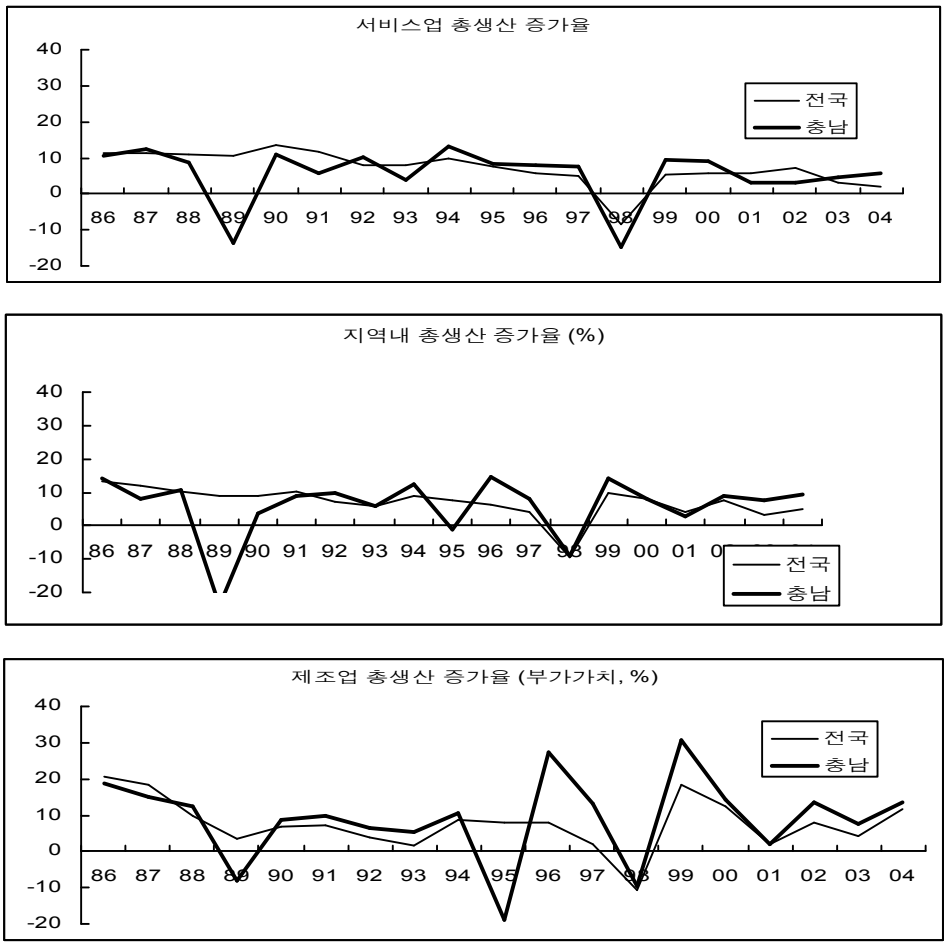

서비스업 업종별로 성장률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기, 가스 및 수도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전국보다 높은 성장

세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2003년 및 2004년에 전국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건설업 및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제조업 성장과 신행정수도 건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7〉 충남 서비스업 업종별 총생산 증가율 (전국 및 충남, %)

		95~99	'00	'01	'02	'03	'04
전기,가스및 수도	전국	5.9	10.4	10.0	11.0	6.3	6.7
	충남	**15.3**	**19.4**	0.6	**59.0**	**4.6**	-3.1
건설업	전국	0.5	-3.3	6.3	1.2	8.6	2.8
	충남	**1.1**	-5.0	6.1	-10.2	**22.3**	**15.5**
도소매업	전국	2.6	10.5	7.6	8.2	-4.2	-2.0
	충남	**3.5**	**11.6**	**11.2**	3.8	**4.9**	**1.1**
숙박및음식점업	전국	3.9	7.9	6.6	10.4	-0.8	-1.7
	충남	3.5	**11.6**	2.3	1.0	**2.9**	**6.4**
운수업	전국	3.5	11.6	2.3	1.0	2.9	6.4
	충남	**6.5**	**12.1**	0.2	-7.4	**8.8**	0.4
통신업	전국	12.7	16.3	41.0	13.5	9.0	7.5
	충남	7.4	9.6	30.7	**19.5**	3.5	**12.0**
금융보험업	전국	4.9	1.4	6.7	23.2	2.2	-2.0
	충남	**12.7**	**5.7**	6.0	**32.8**	**4.5**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전국	2.8	8.6	4.4	5.1	3.0	1.0
	충남	**4.4**	6.0	0.3	1.6	**5.3**	**3.6**
공공행정 및 국방	전국	4.0	4.7	0.7	4.5	2.8	3.2
	충남	**5.4**	3.0	**2.0**	3.3	2.7	2.0
교육서비스	전국	0.7	4.2	6.2	4.1	5.4	4.2
	충남	**1.1**	**4.5**	**11.4**	3.6	**6.0**	**6.7**
보건 및 사회복지	전국	5.4	-6.4	-12.9	4.8	9.7	4.4
	충남	4.9	**-5.6**	-11.7	4.8	5.4	**6.1**
서비스업 전체	전국	3.1	5.7	5.8	7.3	3.2	1.9
	충남	**3.7**	**9.2**	3.3	3.2	**4.7**	**5.8**

주 : 굵은 숫자는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해임.

전국과 비교한 서비스업의 구조를 살펴보면(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비중)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 부문이 특화도가 높고 다른 업종들은 특화

도가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업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가운데, 위의 두 가지 업종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충남의 서비스산업구조가 그만큼 덜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 FTA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분야가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과 비교해볼 때 적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58〉 충남 서비스업종별 지역내총생산 및 특화도

(단위:백만, %)

	전국(2004)		충남(2004)		특화도 (B/A)
	금액	비중(A)	금액	비중(B)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675,274	2.4	1,766,132	4.7	2.0
건설업	65,445,734	9.4	4,103,762	10.9	1.2
도소매업	48,672,544	7.0	1,096,160	2.9	0.4
숙박 및 음식점업	19,045,498	2.7	740,436	2.0	0.7
운수업	31,577,407	4.5	873,853	2.3	0.5
통신업	16,948,953	2.4	527,061	1.4	0.6
금융보험업	58,378,511	8.4	1,449,087	3.9	0.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8,943,366	12.7	2,008,183	5.3	0.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42,798,575	6.1	2,494,600	6.6	1.1
교육서비스업	40,568,880	5.8	2,090,149	5.6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404,819	2.6	622,873	1.7	0.6
기타서비스업	25,738,616	3.7	694,526	1.8	0.5

(2) 충남 서비스업에의 영향

서비스 업종을 크게 도소매 및 음식숙박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 세 업종은 현재까지의 개방도, 한미 양측의 관심사항, 공공적 성격 등에 따라 한·미 FTA에 의해 각각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서비스업에 대해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현재 어느 정도 개방이 될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개방을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모두 나타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고 미국업체들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한·미 FTA 이후 새롭게 진출할 미국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투자협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자극받아 새로운 미국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일 대형 미국업체들이 진출한다면 소비자들의 경우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으나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의 약진과 더불어 재래시장, 소규모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충남 지역의 영세 서비스업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금융을 제외한 통신, 법률, 컨설팅, 회계 등 비즈니스 서비스는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로서 다른 서비스업종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개방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영향과 더불어 수임료 인상 및 영세업체의 몰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수반할 것이다. 국제거래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로펌의 진출이 허용된다면 국제 업무에서 경쟁력 있는 미국 로펌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사업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에서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 비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기반

이 잠식당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변호사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01년 기준으로 50명 이상의 대형로펌은 16개에 불과하고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위 10위에 포함된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 수는 평균 약 1,500명 수준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허용된다면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미국 로펌이 우리나라 로펌을 인수합병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한편 외국 로펌의 진출로 국제거래 업무영역을 잠식당한 국내 로펌간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국내의 대형 로펌이 기존 중소 로펌이나 소규모 법률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영역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세 사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법률서비스 업체들이 전국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규모의 업무가 수도권으로 진출한 외국 로펌에 집중되면서 지역 로펌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새로운 수요자를 찾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더욱 늘어나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신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전국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체들만큼 심각한 환경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보험사업과 저축사업은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우체국은 2006년 지난 5월말 현재 가입자 434만명에 121조원에 달하는 보험계약고를 보유하여 보험업계 5위에 올라 있는 대형 보험사이다. 그동안 법인세, 지방세 면제 혜택, 정부의 자산보증, 예금보험료 부과 면제,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가 감독하는 등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 및 저축사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면 금융기관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그만큼 더 불편해짐을 의미한다.

의료, 교육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교육과 의료는 한·미 FTA에서 예외'라고 밝힘으로써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급격한 충격을 받기 보다는 제한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영리법인화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모든 종류의 민간 보험 상품의 출시를 제한 없이 자유화할 경우 이 분야에서 국내 보험사들보다 많은 know-how를 가지고

있는 미국금융기관들의 진출 및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민간보험가입의 증가, 이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위상 약화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13]의 폐지 요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교육 서비스의 경우 2차 협상 때 미국이 SAT(미국의 대학입학고사 자격시험)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였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SAT와 기타 테스팅 서비스인 TOFLE, TOEIC,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s),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등이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되겠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경우 영어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및 충남지역 교육시장에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4. 한·미 FTA 협상의 간접적 영향

1)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차이와 지역격차 확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오는 또 다른 측면은 성장동력이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인, 교육서비스, 의료, 방송, 문화산업 등을 지칭하는데 이 부문들은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부문들이다. 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2000년 현재 수도권의 집중도가 71.9%로써 한·미 FTA가 진행되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이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한·미 FTA의 파급효과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작을 것이고 제조업이나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양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표 4-59> 참조)

---

1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호법 40조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진료비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표 4-59〉 시도별 산업구조(2004년 GRDP 기준)

(단위 : %)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생산자 서비스	기타(운수,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 보건)	정부 부문
전국	3.6	28.7	11.8	28.0	21.8	6.1
서울특별시	0.2	6.0	9.0	49.8	30.3	4.6
부산광역시	1.4	16.1	13.0	35.5	29.1	4.9
대구광역시	0.6	21.2	10.3	30.1	30.2	7.6
인천광역시	0.9	32.0	10.6	33.0	18.9	4.6
광주광역시	1.6	23.2	11.2	26.6	30.2	7.1
대전광역시	0.4	19.1	12.0	32.6	27.5	8.4
울산광역시	0.5	68.4	7.2	12.3	9.8	1.7
경기도	2.1	39.4	12.1	22.8	18.6	5.0
강원도	6.7	12.6	17.0	18.8	26.2	18.7
충청북도	6.6	40.3	10.7	16.9	17.0	8.5
충청남도	8.9	41.9	15.6	12.9	14.0	6.6
전라북도	12.4	24.6	11.8	19.8	22.1	9.3
전라남도	13.0	31.6	16.0	16.7	14.9	7.9
경상북도	6.9	48.2	13.2	12.6	12.9	6.2
경상남도	6.3	39.2	13.9	16.6	16.2	7.8
제주도	14.6	3.3	15.4	25.9	32.2	8.7

자료: 통계청

KIEP는 장기적으로 농업은 3.5%의 생산 감소가 제조업은 1.4%, 서비스업은 1.9%의 생산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KIEP에서 추정한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별 성장률 증대효과를 기초로 하여 2004년도 시도별 GRDP를 모수로 시도별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은 전국 평균 생산 증가 효과 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는 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성장률 격차가 지속된다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서

울, 경기도 등 수도권 및 지방광역도시와 기타 도 지역과의 지역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4-5〉 한·미 FTA 이후 산업구조 차에 따른 시도별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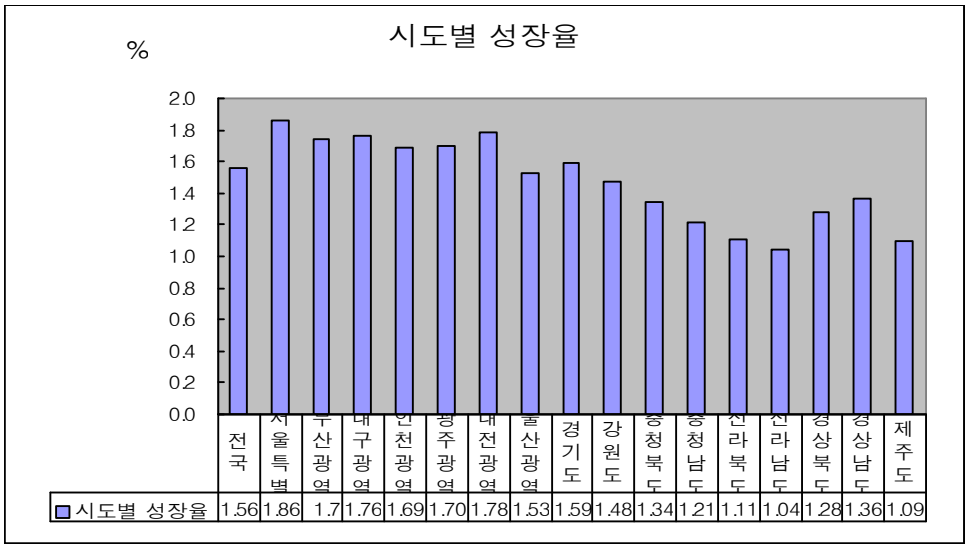

실제로 미국과 1989년에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지역 간 경제적, 재정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1996년경에 가장 성장한 지역의 GDP는 평균의 140% 이상이었던데 비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의 GDP는 평균의 73%로 양 지역 간 격차는 FTA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세계에서도 가장 지역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이후 10년간 북부주의 성장률은 약 2~4%에 이룬 반면에 남부 주들의 성장률은 약 -1,2~1.4%에 그쳐, 남부주들의 일인당 소득은 멕시코 시티나 누에보 레온 등과 같은 북부 주들의 일인당 소득의 62% 밖에 되지 않는 정도로 격차가 심화되었다(<그림 4-6>참조). 멕시코 전 경제성장관인 루이스 에르네스토는 NFTA협정은 "분명히 지역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Pastor, 2001).

〈그림 4-6〉 멕시코의 지역별 1인당 GDP 성장률과
지역격차(1993~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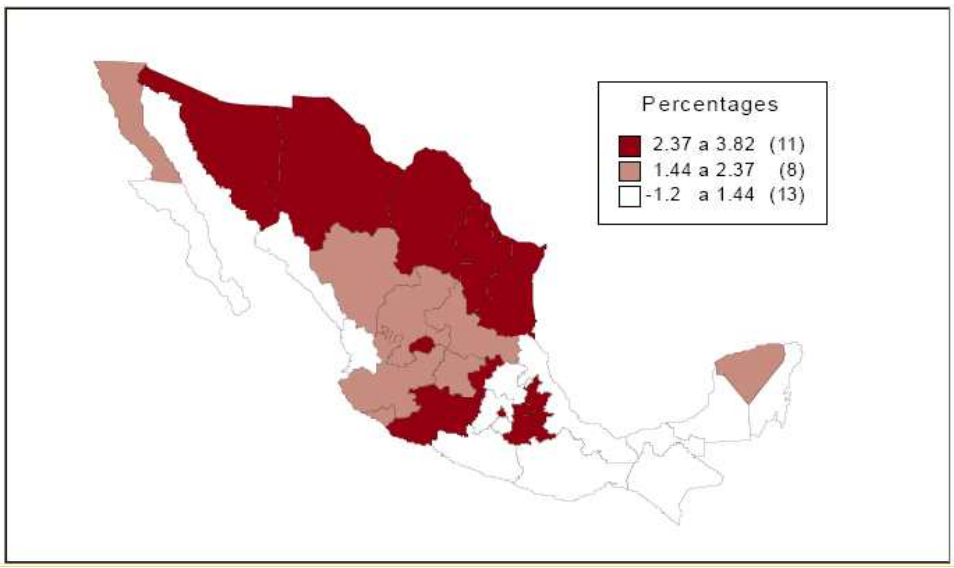

자료: 제라도 에스퀴벨(2006),

2)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약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1) 수도권 규제의 완화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정책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경기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에 관련 정책의 추진의지가 다소 약화되는 추세이다. 한·미 FTA 협상 체결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거의 개방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한·미 FTA의 협상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경제 5단체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고, 정부의 방침(수도권 질적 관리 대책)도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는 2012년까지는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는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최근에 재경부 등은 2012년 이전이라도 선별적 심사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규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모두 철폐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기업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더 이상 강한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경우 소유지분한도를 4%(지방은행의 경우 15%로 제한)로 하고, 또 비금융 산업자본이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금산분리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오정근, 2006).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도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이유로 완화가 강력하게 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도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에 대해서만 규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수도권 규제의 spill over 혜택을 누려온 충남도의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방에 대한 지원 약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우려

정부는 한·미 FTA의 양허안에 취약지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등을 배제하여 낙후지역 발전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방침이나 FTA의 부수적 효과로 전체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와 시장주도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균형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 이번 협상과정에서 지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①중소기업 의무 대출 규정의 폐지

현재 외한은행 지점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35%이상,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수혜 받지 않는 외한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25%이상을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한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으며 영업상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자금 사정 호전 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며(신용상, 2006)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연계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방침이나 종국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②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지역의무 공동도급[14])등)의 완화

미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지방방정부나 공기업의 건설 분야 양허하한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달분과 협상에서 현재 1500만SDR(252억원)로 되어있는 시·도와 공기업 발주 공사의 양허 하한선을 중앙정부 수준인 500만SDR(84억원)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허 하한선이 낮아지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지고, 건설시장에 있어 미국 업체들과 지방중소건설업체간의 경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정책을 시장논리에 맡겨왔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수 인종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소수 인종이나 소외계층의 보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양허할 의사가 있으나 지역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의 특정한 개입을 허용할 의사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내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보호보다는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시장중시주의자의 주장과 맞물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전반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 가운데 통상정책이 지역발전정책을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지방정부 주권의 약화

FTA는 국가 간의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있지 않아 협정의 체결로 모든 지방정부의 행위가 동시에 규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의무 공동도급 양허 하한선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1500만SDR(252억원)에서 500만SDR(84억원)로 낮아지는 경우 모든 지방정부의 조달공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14) 일정규모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해당 시·도 소재 건설업체 시공참여 중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 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WTO의 정부조달 협정(GPA)에 배치되므로 양허하한선인 252억 이하 지자체 공사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 정부의 자주적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 협정이 모든 주정부의 조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협정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나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도록 명시하여도 주 정부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있다면 연방정부의 규정이 주정부의 조치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실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최대의 쟁점 중에 하나가 주 정부 조치의 포괄적 양허문제이다. 주 정부가 협정에 비합치 조치를 하는 경우 미국은 주 정부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미국은 주정부의 조치를'포괄적으로 유보한다'라고 협정문에 넣자고 주장한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 정부의 협정에 비합치하는 조치까지도 미리 list-up하여 부속조항에 명기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개방하자고 주장하나, 미국은 헌법과 주정부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결과 미국은 주 정부 비합치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유보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협정문에 적용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주권을 그만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진전되어야 할 우리나라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지방정부의 미래 권한이 될 사항까지 미리 FTA 협상에서 일괄 규정해 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외에도 FTA 협정은 투자 관련하여 공익적 수용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투자협정문 section 1의 수용과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의무조항에 공익적 목적의 간접적 수용이더라도 비차별적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의해 유효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지방정부가 공익적 목적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 할 경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간접 수용이란 직접 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NAFTA 투자분쟁 사례 중 미국 Metalclad 사와 멕시코 정부 간의 사건이 그 예이다. 동 사건에서 멕시코 정부는 Metalclad 사가 멕시코 지방에 소재한 유해 쓰레기 매립장의 영업에 필요한 인가를 해 주었으나 지방정부가 허가발급

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중재판정부는 멕시코 연방정부에게 1천 6백만 불의 배상을 명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Guadacaza 군 정부는 Metalclad 사의 쓰레기 매립장이 유해 폐기물 매립으로 환경을 훼손을 우려가 크지 때문에 매립장 대상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매립장 운영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간접적 수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 연방정부가 배상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지방정부의 환경관련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향후 한·미 FTA협정이 체결되면'정당한 보상'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 국내 기준의 차이가 커 지방정부의 공익적 조치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타 한·미 FTA 협상의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권 제약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의 행동에 변화를 강제할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 지방정부의 공해업소 감시 기능 강화 : 만약 미국의 주장처럼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 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회부 및 연간 1천 5백만불 한도의 위반과징금을 부과하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지방정부에서 그간 기업의 불편을 이유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덜 적극적이었던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지역 기업의 지재권 관련 비용 부담 확대, 학교, 도서관, 지방정부 등의 지재권 관련 비용부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 요약 및 충남의 대응 전략

1. 연구의 요약

한·미 FTA협상의 파급영향은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표되거나 최종 협상 결과가 나와야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간의 한·미 FTA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협상 내용을 가상적 시나리오로 만들어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긍정적인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리한 측면을 위주로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피해를 중심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간 한·미 FTA를 둘러싸고 양자 간의 논란은 비생산적인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한·미 FTA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미국과 호주간 FTA 협정이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NAFTA, 그리고 2차까지 진행된 한·미 협상을 통해 들어난 내용을 가지고 한·미 FTA의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간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어온 내용으로 볼 때 유럽 등 나라의 자유무역협상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하며 미국식 제도와 기준을 대상국에 강요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고 농산물의 경우는 쌀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충남지역의 예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한편 서비스부문 개방과 투자협정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부문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협정에 따른 실질적인 개방수준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 업종을 크게 도소매 및 음식·숙박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셋으로 나눈다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 서비스는 이미 거의 개방되었고, 비즈니스서비스 경우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으나 양측이 개방의

원칙에는 합의하였기 때문에 전력, 가스, 수도, 의료, 공교육, 방송 등 공공분야만 제외하고는 거의 개방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제조업과 농산물 부문의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실물 교역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실증자료로 제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추정하는 것 정도로 그쳤다. 한편 농축산물의 경우 관세 철폐 대상에 쌀을 포함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였다. 그러나 쌀을 포함하는 않는 경우는 예상보다 피해 정도가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을 예상하는 것은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산액 감소가 농가소득과 농업포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 및 충남의 농업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대 중앙정부 요구 부문

1) 충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상전략

충남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이해득실은 가) 한미 협상에 있어서 충남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나) 대내적으로 충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성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설득, 이해조정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이 절에서는 가)의 한미 협상에 따른 충남의 이해관계 반영문제를 다루고 나)의 충남도 대내적 구조조정과 피해구제 문제는 절을 달리하여 논의한다.

3차까지의 협상진행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협상 요구안과 차이점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둬 왔으나 4차 협상부터는 미해결된 협상의제를 놓고 주고받기

를 통해 타협을 시도할 전망이 크다. 이 경우 충남의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전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외 협정 추진 경험을 보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진전된 나라일수록 대외 협상에 앞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해 왔다. 호주·미국 간의 FTA과정에서도 호주정부는 미리 FTA의 협상시작과 연방정부의 협상방향을 주정부에게 통보하고 주정부별로 이해관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국과 협상에 임하였다. 물론 개별지역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도 수렴하는 노력이 있을 때 협상에 대한 지역의 지지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충남은 제조업의 경우 주력부문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으로서 이 부문들의 미국 측 관세가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인하보다는 반덤핑 등 무역장벽 완화가 더 관심사항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주요 관심 분야인 섬유나 개성공단 제품의 포함문제는 충남의 산업여건과 당면과제로 볼 때 시급한 의제는 아니다. 농업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약 4%미만의 중요도만을 가지나 충남에서는 중심 산업의 하나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충남은 금융, 통신 등 사업서비스 분야보다는 교육, 보건 등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아 사업서비스 부문 개방보다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개방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3차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의 섬유분야와 한국의 농업분야를 맞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충남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정부협상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도 반덤핑 조치 등의 무역장벽 완화조치가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경우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최대한 유보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다. 쌀의 경우 충남은 전국 주요산지 중에 하나이며 미작농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에서 제외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그 외에도 피해액 규모가 큰 콩,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은 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충남 특정지역에 집중도가 높아 해당지역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삼(금산), 딸기(공주) 등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으로 반영토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

2) 한·미 FTA에 따른 지역격차 확대 및 지방주권 약화의 대응

한·미 FTA 협상 체결 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양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도시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과 충남과 같은 지방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한 지역 사이에 성장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한·미 FTA의 협상과제가 아니나 협상 체결의 결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한·미 FTA 체결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며,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 의무 대출 규정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기존의 지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도 폐지 혹은 완화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 FTA 과정에서 낙후지역 지원문제는 예외적 조항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유럽 연합의 구조조정 기금(Structural fund)과 같이 한·미 FTA 이후 성장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제도도 강화하고 대외 개방과 통상우선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의 완화와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제통합의 목표는 회원국 간의 상호번영과 격차 시정을 제일의 목표로 하나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통상확대와 투자보호를 제일의 목표로 한다. EU의 경우 경제통합을 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위 유럽 지역개발기금 등의 구조조정 기금(structural fund)을 EU 예산의 총 30% 수준까지 조성하여 낙후지역과 성장지역의 격차해소에 할애했다. 그러나 같은 경제통합을 주창한 NAFTA의 경우 이런 발상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NAFTA 이후 지역격차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FTA 협정에서는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익적인 수용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정부의 주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협상 부속조항 마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충남의 대내적 대책부문

1) 대책의 기본방향

(1) 적극적 구조조정

FTA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개방과 경쟁이 강화된다는 의미로서 이는 반드시 이익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동시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해를 보는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나 자본이 이익을 보는 분야로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이나 소득감소가 발생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를 보는 분야에서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인력 및 자본이 산업 간의 이동은 매우 어렵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 따라 농업부문은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곡물류의 생산을 줄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국가 간에 이동이 적은 품목으로 생산구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서 한·미 FTA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한·미 FTA로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충남은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특화산업이 선정되어 있고 이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설정된 지역특화산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으로 인해 물류비용절감이나 지역 간 연계가 원활해져 사회 인프라는 매우 양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천안· 아산·당진 등의 서북부권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산업을, 서산· 태안·보령·서천 등의 서해안권은 자동차부품산업을, 예산·홍성권은 농업바이오산업, 서천·부여· 청양권에는 백제문화관광산업, 공주· 연기에는 문화 및 행정서비스산업을, 논산·금산권에는 실버 및 건강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관련 외국인기업의 적극적 유치

한·미 FTA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차원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공장부지의 원활한 공급 등 간접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한·미 FTA에 따라 경쟁우위가 있는 자동차부문이나 IT부문은 충남지역에 상당한 지역적 기반이 형성된 부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은 IT나 자동차산업, 농업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분야의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한·미 FTA에 대한 이해 증대

한·미 FTA에 대한 지역차원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산업별· 업종별로 어떤 부문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어떤 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FTA는 기업의 차원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기회나 경쟁력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미 FTA는 경제통합이 아닌 시장 확대의 성격을 지니고 이는 개방과 경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의 차분하고도 적극적인 준비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추진 과

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내 예상 피해부문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부문별 대응방안

(1) 중소기업 부문

중소기업은 충남 제조업 고용의 70.7%를 차지하는 등 충남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지원필요분야는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한미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지출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된 대책들이다.

아울러 충남도는 미국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지 유통 네트워크 구성 등 비가격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및 일본에 치중된 중소기업의 대외거래를 미국으로 확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는 미국 시장진출과 관련된 경험 전수 및 확산을 위한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포럼 활성화나, 글로벌 모니터링센터의 구축을 통해 중간재 부품 등 미국의 글로벌 구매수요 관련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성 제고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방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추진과 제도적 지원 장치를 도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업부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급격한 개방화 및 경영환경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도 대형화, 전문화, 지역밀착서비스의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컨설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과 의료분야는 한·미 FTA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화 허용 등 산업화 추진, 이를 위한 개방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포함하여 보다 큰 틀의 구조적 변화에 지역기관들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의료·교육서비스부문에서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설비 확충, 그리고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의 영리법인화는 취약계층의 공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의료, 교육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도 각 지방의 성장동력 신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유발하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서비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즉 2015~20년경 G7국가 수준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용구조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남지역도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이 부문의 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프랜차이즈산업 등 신규유망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이 상호 인정된다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진출이 증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도내 관련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수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농업부문

①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

충남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농업비중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총 취업자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보전이라

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 부여, 논산, 금산 등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산업이다. 한·미 FTA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개 민감품목에서 양허배제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관세쿼터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이 개방이 불가피하여 충남의 농업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나 그간 충남도정에서 농업은 제조업에 밀려 부차적인 산업으로 취급되어 왔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정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도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남도는 민선 4기 농어업 농어촌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 확정할 예정이나 현재 나온 시안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민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은'선 대책, 후 협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도'선 협상, 후 대책'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기구나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의 이해를 반영한 협상의제 설정을 중앙당국에게 요구하고, 도내 피해 최소화와 구조조정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②과수,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하여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성, 예산의 축산, 천안, 아산의 과수, 논산 딸기, 금산 인삼 등의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한·칠 FTA 체결이후 과수부문은 피해구제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FTA 이행특별법 및 FTA 특별 기금) 콩 등 식량작물이나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와 지원 대책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중앙정부 지원은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피해 지원이므로 도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구조조정 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무역구조조정지원법'은 제조업에 국한하

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피해보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콩, 보리, 포도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유채, 메실 등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예산, 홍성 등의 축산부문에 대해서도 품질고급화, 차별화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삼의 경우 미국산 화기삼(花旗蔘)과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④농산물 수출의 확대

현재 충남의 농산물 수출은 약 1억불수준으로 충남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충남 농산물 수출 1위인 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주력 상품화하고,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치, 화훼 등의 수출은 각각 4백만불, 7백만불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류비, 신선도 유지 등의 제한요인 극복을 통해 수출증대를 꾀해야 한다. 다만 멕시코, 칠레와 FTA가 기 체결되어 있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는 쉽지 않은 전망이므로 동남아와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⑤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대책 마련

농외 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검토 중인 고령·중소농에 대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전,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 등과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문성 외.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영민·임호기·염규배. 2006. 07.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계의 주장과 NAFTA의 경험』.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2005.『한·중·일 FTA :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수환. 2005. 『FTA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원호 외, 2000,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 전 전망과 실행교과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0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원호 외, 200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정책연구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학기. 2004. 『한・일 FTA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김홍종·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림부, 2005,『농림통계연보』.

박번순, 2004. 3. 31,『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연구원, 2006,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용상, 2006,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개방전략과 한국의 산업발전 :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제발전학회, 산업연구원, 2006.09.22.

오정근, 2006, 「금융서비스 부문 FTA 필요성과 대응과제」, 『개방전략과 한국의 산업발전 :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경제발전학회, 산업연구원, 2006.09.22.

왕윤종·정인교, 1998,「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 경제의 분석과 전망』. 제 4권 제2호, pp. 135~188.

이명헌(2006),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한 민감품목」, 미발표 논문.

이준규, 2006,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외, 2005,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이창수·이경희. 2006. 0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2006, 『한·미 FTA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

정인교. 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 주요이슈와 경제적 효과』. 제 2차 FTA 정책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정재호, 2006,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제라도 에스퀴벨, 2006,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FTA와 경제구조 변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KDI(한국개발연구원), KORUS FTA 민간대책위원회

충청남도, 2005, 『충남도정백서』

충청남도, 2005, 『통계연보』 및 시군별, 2005, 『통계연보』.

최세균. 2006,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 방향』,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특별대책연구단.

통계청,『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한국은행, 2004,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 효과』, 『조사통계월보』.

한덕수, 2006,『한·미 FTA와 양극화 대응의 동시 추구』.2006. 03.

한두봉, 2006,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2006. 5. 17.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2006, 『한·미FTA국민보고서』.서울: 그린비

현혜정・이성봉, 2006,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gama, L. and C. A. McDaniel. 2002. “The NAFTA Preference and U. S.-Mexico Trade.” Office of Economic Working Paper No. 2002-10-A. Washington: USITC.

Audley JJ., Papademetriou DG., Polaski S, and Vaughan S., 2003, *NAFTA's Promise and Real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oulombe, Serge. 2004. “International Trade Diversion,, the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L Curve.” Topic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4, No. 1, Article 16.

Gonzalez Gomez, 1999, "Crisis and Economic Change," pp. 55-56 Elvia Gutieerez, "Disturbing Trend Haunts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ies Are Alarming," El Financiero International Edition.

Hanson, G. H. 2002. “The Role of Maquiladoras in Mexico's Export Boo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Hejazi, Walild and Safarian, A. Edward. 2002. “Explaining Canada's Changing FDI Patterns.” (http://economics.ca/2003/papers/0092.pdf)

Hummels, D. J. Ishii, and K. Yi.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4, pp.75-96.

Kairos, John Dillon, 2003, “NAFTA in Canada: The Era of a Supra-Constitution.” In Alianza Social Continetal, *Lessons from NAFTA: The High Cost of Free Trade*.

Lederman, D., W. F. Maloney, and L. Serven, 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Pastor, A. Robert, 2001, *Toward a North American Community: Lessons from the Old World for the New*,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afael Tamayo-Flores, 2000, "The Differential Impac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Local Economies: How Are lagging Mexican Regions Performing?" *Documento de Trabajo* AP-77, Mexico City: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s (CIDE).

Romails, John, 2004, “NAFTA's and CUSFTA's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Chicago GSB. (January)

Rugman, A. M. and Brain, Cecilia. 2002. “Intra-Regional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 America.” (www. bus. indiana. edu /bepp /Rugman. Intraregional.doc)

Trefler, Daniel. 2001. “The Long and Short of the Canada-U. S. Free Trade Agreement.” *NBER Working Paper* No. 8293.

Waldkirch, Andreas. 2003. "The New Regionalis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Mexic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12:2 151-184.

World Bank, 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Weisbrot, Mark; Rosnick, David; Baker, Dean. 2004. "NAFTA at Ten",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Cepr). March 1, 2004.

〈부록 1〉 한·미 FTA 의 충남 수출입에 대한 효과 추정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변화에 따른 수출입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서 회귀식(ARDL)모형을 이용해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ARDL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사용하면 장단기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명변수가 n개인 ARDL(p.q)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t = \beta_0 + \sum_{i=1}^{p} \beta_i y_{t-i} + \sum_{i=1}^{n} \sum_{i=1}^{q} \alpha_{ji} x_{jt-i} + \epsilon$$

특히 p=1과 q=1이고 설명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y_t = \beta_0 + \beta_1 y_{t-1} + \alpha_0 x_t + \alpha_1 x_{t-1} + \epsilon_t$

인데 이 경우 x변화에 대한 y의 변화크기는 단기적으로 α_0이고 장기적으로는 $(\alpha_0 + \alpha_1)/(1 - \beta_1)$이다.

수출과 수입은 가격변수와 소득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함수에서는 가격변수로 달러표시 수출가격지수를 사용하였고 소득변수로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을 가격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수입함수의 추정에서는 원화표시 수입가격지수를 가격변수로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를 소득변수로 사용하였다. 로그를 취해야 탄력성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출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y_t) = \beta_0 + \beta_1 log(y_{t-1}) + \alpha_0 log(P_t) + \alpha_1 log(P_{t-1}) + \gamma_0 log(IP_t) + \gamma_1 log(IP_{t-1}) + \delta_0 log(yen/\$_t) + \delta_1 log(yen/\$_{t-1}) + \epsilon_t$$

여기서 y_t ,P_t, IP_t 및 $yen/\$_t$는 각각 수출액(달러 표시), 수출 가격지수(달러 표시),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 및 엔/달러 환율이다.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시계열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분 검정을 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이 존재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부록 2〉 시군별 품목별 농축산물 생산감소액

(단위: 억원)

	충남전체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미곡	**8476.1**	**423.6**	**490.5**	**524.8**	**632.5**	**1034.3**	**128.5**
콩	293.0	16.4	**42.4**	12.2	14.1	**31.9**	15.9
돼지	197.0	17.4	10.6	**18.1**	15.2	6.0	**19.0**
닭	180.0	17.9	13.0	**17.7**	**20.4**	7.7	11.4
포도	132.0	**77.9**	0.7	4.2	**24.3**	1.3	3.5
사과	127.0	1.7	3.9	0.9	11.9	3.2	4.7
한육우	158.0	4.8	**19.2**	9.1	7.0	**14.4**	7.8
배	97.0	**38.5**	4.3	0.4	**20.2**	2.1	8.3
인삼	70.0	5.5	2.7	2.0	2.7	2.9	12.9
고추	50.0	2.6	5.1	1.8	2.1	2.0	1.2
딸기	40.0	0.0	2.1	0.5	0.0	0.2	**23.0**
토마토	27.0	0.1	7.6	0.5	0.5	0.3	2.6
마늘	20.0	0.2	0.5	0.3	0.8	4.2	0.6
복숭아	15.0	0.5	1.8	0.0	1.6	0.2	1.5
팥	7.0	0.2	0.6	0.2	0.5	0.9	0.6
녹두	4.0	0.1	0.3	0.5	0.2	0.7	0.1
양파	2.0	0.0	0.0	0.0	0.0	0.5	0.2
땅콩	3.0	0.0	0.0	0.0	0.0	0.6	0.3
메밀	1.0	0.0	0.1	0.6	0.0	0.1	0.0
감자	2.0	0.0	0.1	0.0	0.1	0.4	0.0
보리	1.0	0.0	0.1	0.1	0.1	0.1	0.0
합계	9,902.1	607.4	605.6	593.9	754.2	1,114	242.1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미곡	**234.5**	**666.0**	**627.2**	**602.1**	**313.1**	**499.6**	**626.9**	**485.3**	**1187.1**
콩	**13.7**	**14.8**	**22.1**	6.2	**23.8**	13.4	17.6	**29.1**	**19.4**
돼지	3.0	8.1	6.8	2.0	3.9	**44.7**	**15.6**	1.2	**25.5**
닭	2.7	**10.4**	**16.0**	**7.4**	**9.7**	14.9	11.2	0.2	**19.5**
포도	5.8	4.5	2.1	2.8	0.0	0.2	0.8	1.4	2.4
사과	3.3	0.3	1.2	1.3	0.5	5.7	**68.3**	1.5	18.5
한육우	3.4	8.4	9.0	4.3	**9.1**	**24.8**	21.1	3.7	12.0
배	3.8	4.5	1.1	0.1	1.2	2.1	8.0	0.4	2.1
인삼	**21.5**	3.5	2.0	0.3	0.2	3.0	5.1	2.9	2.7
고추	0.7	1.2	2.4	1.5	6.1	5.7	2.9	5.1	9.6
딸기	0.6	1.1	6.6	0.1	0.2	4.7	0.8	0.0	0.1
토마토	0.1	0.5	10.9	0.3	1.4	0.7	1.0	0.2	0.3
마늘	0.0	0.1	1.0	1.3	0.4	1.1	0.9	7.6	0.9
복숭아	0.8	6.2	0.6	0.1	0.1	0.7	0.7	0.0	0.2
팥	0.5	0.2	0.7	0.5	0.4	0.5	0.7	0.3	0.3
녹두	0.2	0.1	0.2	0.2	0.2	0.2	0.4	0.3	0.3
양파	0.0	0.0	0.1	0.1	0.0	0.1	0.0	0.8	0.1
땅콩	0.0	0.0	0.1	0.0	0.4	0.0	0.8	0.8	0.0
메밀	0.1	0.0	0.0	0.0	0.0	0.0	0.0	0.0	0.0
감자	0.1	0.1	0.1	0.0	0.0	0.1	0.1	0.1	0.6
보리	0.0	0.0	0.0	0.0	0.0	0.1	0.1	0.4	0.0
합계	294.7	730.1	710.4	630.7	370.6	622.2	783.0	541.5	1,301.5